



2014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2014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2014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TEL 043-710-9000 <http://www.kohi.or.k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2014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 발 간 사

올해 초 신규직 및 전환배치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기 업무적응을 돕기 위한 실용적인 복지업무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현행 복지 관련 지침서들을 토대로 한 실무경력자들의 다년간 업무노하우가 담겨진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일환으로 본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신규직 사회복지공무원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신규직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조기에 업무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정책 및 사업변화에 따라 매뉴얼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복지는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고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복지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공공전달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복지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매우 복잡다양하고 급변하고 있어서,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매뉴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선배 실무자들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아온 실제적 경험과 실전업무스킬 등을 담고 있어 신규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매뉴얼 제작을 함께 해주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복지행정교육부, 그리고 집필과 검수에 참여해 주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7월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CONTENTS



<b>I. 한 눈에 보기</b>	<b>5</b>
<b>II. 주요 복지사업</b>	<b>9</b>
1. 저소득층	11
1-1. 국민기초생활보장	11
1-2. 의료급여	17
1-3. 자활사업	22
2. 차상위	27
2-1. 한부모가족지원	28
2-2.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	32
2-3. 차상위장애인	36
2-4. 차상위자활	39
2-5. 우선돌봄차상위	42
[쉬어가기 1] 차상위계층 공통지원내용	46
3. 아동·청소년	49
3-1. 영유아 보육지원	50
3-2. 아이돌봄지원	54
3-3. 아동급식지원	58
3-4. 가정위탁지원	62
3-5. 청소년증발급	66
4. 장애인	69
4-1. 장애인 등록	70
4-2. 장애인 서비스 연계 지원	74
4-3. 장애인연금	75
4-4.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81

##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 7. 1.

집. 필. 진. 장을진 주무관 충남 천안시 | 정미연 팀장 경기 부천시 춘의동 | 연남석 주무관 강원 인제군 서화면  
| 이차현 주무관 경기 양평군 강하면 | 이지영 주무관 광주 광산구 | 나민경 주무관 서울 노원구 중계동

4-5.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85
4-6. 장애인활동지원	88
5. 노인	95
5-1. 기초연금	97
5-2. 노인돌봄서비스	102
5-3. 개장신고 및 허가	106
6. 긴급지원	111
6-1. 긴급지원	112
6-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117
7. 서비스연계	121
7-1. 통합사례관리	122
7-2. 이웃돕기사업	126
7-3.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128
7-4. 저소득층 자금융자지원사업	131
8. 기타 복지 사업	135
8-1. 바우처	136
8-2. 초중고 교육비지원	143
[쉬어가기 2]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한 복지관련 제증명	146
<b>III. FAQ(선배들의 조언)</b>	<b>149</b>
<b>IV. 관련용어</b>	<b>159</b>
〈부록 1〉 제출서류목록	168
〈부록 2〉 산정기준표	169

2014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 1. 한 눈에 보기

- ❖ 저소득층
- ❖ 차상위
- ❖ 아동·청소년
- ❖ 장애인
- ❖ 노인
- ❖ 긴급지원
- ❖ 서비스연계
- ❖ 기타 복지사업



# 한 눈에 보기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 자활사업

## 차상위

- 한부모가족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자활
- 우선돌봄차상위

## 아동·청소년

- 영유아보육지원
- 아이돌봄지원
- 아동급식지원
- 가정위탁지원
- 청소년증발급

## 장애인

- 장애인 등록
- 장애인 서비스 연계 지원
- 장애인 연금
-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 장애인활동지원

## 노인

- 기초연금
- 노인돌봄서비스
- 개장신고 및 허가

## 긴급지원

- 긴급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 서비스연계

- 통합사례관리
- 이웃돕기사업
-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 저소득층 자금융자지원사업

## 기타 복지 사업

- 바우처 사업
- 초중고 교육비지원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2014

##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 II. 주요 복지사업

### 1. 저소득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
- ☛ 의료급여
- ☛ 자활사업



## II 주요 복지사업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사전숙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1. 저소득층

### 1-1. 국민기초생활보장

1999년 9월 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빈곤층 대상 공공부조제도의 공식명칭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



\* 신청 처리 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li> <li>- 소득·재산신고서</li> <li>-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li> <li>- 제적등본</li> <li>- 본인명의 통장사본</li> <li>- 의료급여신청특례신청서</li> <li>-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li> </ul>	'14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 p.14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지원 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sup>1)</sup> 보호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18-26

📄 조사내용 :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을 바탕으로 공적 조사정보를 기초로 함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 그 외 특례수급자

\* 가구단위 보호 원칙이나 개인단위 보호 중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 가능함

구분	내용		관련 지침
수급자 범위의 특례	재산범위특례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46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자 범위 특례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32
	외국인에 대한 특례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9
	개인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특례	의료급여 특례, 교육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22, p.55-62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63-64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에이즈 감염자) - 농어민가구 - 정부 해외 인턴 사업 참가자 등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특례 - 군입대자가구 수급권자 범위 특례 -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제6편)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제8편)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66-71	

1)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

$$= \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text{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구분	내용	관련 지침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sup>2)</sup>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92-115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공제액 - 대도시(5,400만원) - 중·소도시(3,400만원) - 농어촌(2,900만원)	일반 재산(월4.17%) <sup>3)</sup> , 주거용 재산(월1.04%)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20-127
		금융 재산(월6.26%)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27-131
		자동차(월100%) <sup>4)</sup>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32-137

2)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3) 주거용 재산 제외

4) 자동차 기준 - ① 월 100% 환산되는 자동차

② 재산가액 선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③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구분

※ 2014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최저생계비 (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4	2,535,925
타 지원액 (B) <sup>5)</sup>	115,340	196,391	254,060	326,164	386,504	446,845	507,185
현금급여기준 (C=A-B)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주거급여액 (D)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398,157	451,923
생계급여액 (E=C-D)	393,633	670,239	867,056	1,063,872	1,260,688	1,457,504	1,654,320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28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관련지침
	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기피 등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49-158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무	-	
부양의무자 없음	-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주거급여액 산출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액 488,063원 - 150,000원 = 338,063원  
 (생계급여액 : 263,581원, 주거급여액 : 74,482원)

5) 최저생계비에서 현금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 수준을 의미. 개별가구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됨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급여 편)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관련지침
생계·주거급여 <sup>6)</sup>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신청가능(1인당 월 10kg만 가능)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75-186 p.190-193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교과서대 : 1인당 129,500천원(연1회) - 학용품비 : 1인당 52,600(학기당 26,300원) -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38,000원(연1회) 지급	- 중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94-197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포함)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 처리기한 4일 - 지급일 7일 이내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98-200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 처리기한 4일 - 지급일 7일 이내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14의료급여사업안내 참조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387

☞ 지원내용(각종감면제도)

지 원 내 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시·군·구, 읍·면·동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 비 면제,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 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5천원 기본할인(초과 50%할인, 정액기준)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 업체에 직접 신청
· 전화 기본요금감면(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권)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6) 2014.7 주거급여 개편으로 개정 예정(보건복지부 → 국토해양부 소관부서 이관 및 급여내용 변경 예정)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국민기초수급자 관련 초기상담 시 행복e음에 등록되어 있는지 파악  
: 행복e음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기존 초기상담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인의 생활실태, 부양의무자 범위 파악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할 때 안내할 사항 파악 p.153
- 초기상담 시 산정특례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특례대상자 확인서로 같음 하고, 근로능력 평가는 제외
- 읍·면·동에서 하는 국민기초수급자관리 업무

구분	내용	관련지침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및 기피로 부양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 : 기본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단절 여부 파악을 확인. 필요시 부양거부, 기피 확인을 위해 조사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 할 것	'14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 p.153
정부양곡신청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매월 수요량과 양곡대금을 시·군·구로 보고함	'14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 p.183
수급자증명서 발급	수급자증명서 발급업무 복지전화신청용증명서 발급 업무	'14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 p.203
변동사항 관리	수급자 가구원 모두 전출 할 경우: - 원칙 : 수급자 관련카드 및 서류 최초 신청지에 보관함 - 예외 : 서류이송이 필요한 경우 사본(스캔본) 이송 - 사후관리 : 수급자 제외 및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틈새계층으로 관리하여 이웃돕기 도모 - 관할 동으로 수급자 전입 시 소득 및 재산 중 변동서류 제출할 것을 안내	'14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 p.210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 원칙 : 본인이 급여 관리 - 예외 :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 노인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급여 관리하도록 실시. 의사무능력으로 지정된 세대에 대하여 반기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14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 p.212

- 재산 조사 중 자동차 기준을 초기 상담 시 한 번 더 확인 할 것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안내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405

1-2.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 (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종류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li> <li>-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li> <li>• 타법적용자</li> <li>-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li> <li>• 행려환자</li> </ul>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201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p.5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7) 상급 종합병원으로 주로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의미하며 전국 25개가 있음. 예,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의료원, 원자력병원, 아산 병원 등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개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7조)
-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 급여 청구 분은 전액 본인 부담
- \*\*\* 2종 장애인 경우
  -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장애인 의료비에서 750원만 지원
  -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과 2차·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됨

📄 **읍·면·동 의료급여 업무<sup>8)</sup>**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업무**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 연장승인 신청을 통해 추가 급여일수를 부여 받아 의료급여 이용 가능**

- 업무 절차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
  - \*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는 연장승인 신청이 불필요
  -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 조건부승인, 연장불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의료급여 상한일수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음
  -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질환 군 별 가능한 연장승인 일수
-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고시질환 : 1회(90일) 연장 총455일
- \* 그 외 기타질환 : 2회(180일)연장 총545일

→ 201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p.173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

- 적용대상
  -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65일 + 1차 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 (상한일수 365일 + 90일(1차) + 90일(2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 단, 노숙인 등은 적용 제외
  - \* 질환군 중 어느 하나가 급여일수 초과되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질환의 급여일수가 초과되어도 연장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신청서 작성 불필요

- 적용기간(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 차기연도 말까지

- 선택의료급여 기관의 변경

-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 등 거주지 변경
-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년 1회에 한함)
- 읍·면·동에서는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어느 병의원으로 할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 등과 상담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안내

→ 201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p.190

8) 의료급여사업은 주로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서 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빈도가 높은 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 재구성하여 기술함

■ 노인틀니

만7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레진 상 완전틀니, 클라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sup>9)</sup>를 하는 제도

- 대상자 :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레진 상 완전틀니, 클라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 1종 수급자 20%, 2종 수급자 30%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

-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등록하는 제도
- 등록절차



→ 201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p.157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인 경우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서'를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등록.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등록기간 동안 근로능력평가 유예)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 5년, 중증화상환자 : 1년(6개월 연장 가능)
  - 의료급여 절차 예외 적용 : 단계별(제1차 → 제2차 →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절차 거치지 않고 제2차나 제3차 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질환군 별 급여일수 산정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산정<sup>10)</sup>

- 지원 절차



-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 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 원본 제출 원칙(팩스의 경우 추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 산정특례 대상자의 가구원별 자격(종별) 책정이 달라 질수 있음에 유의

→ 201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p.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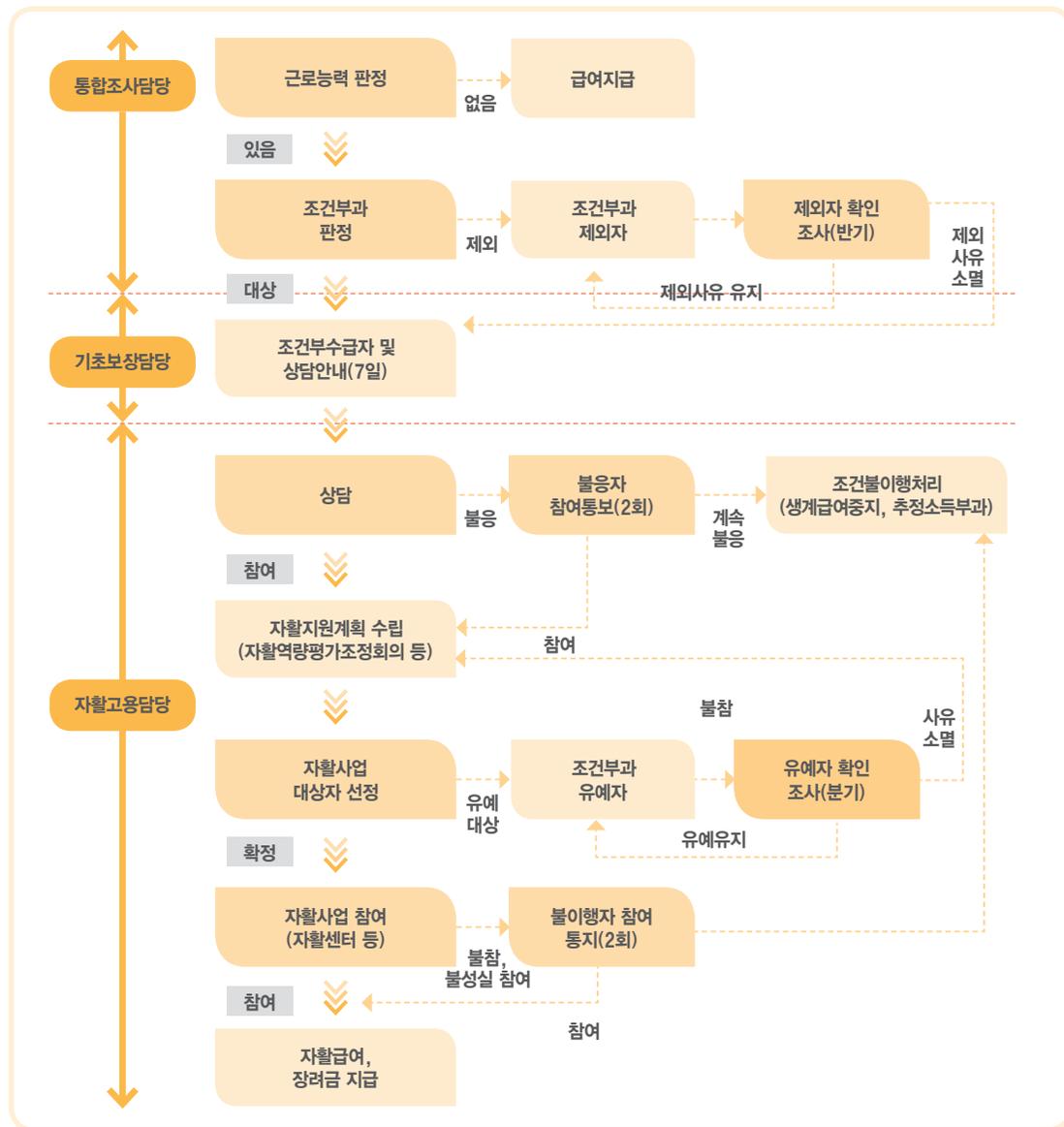
10) 단, 뇌혈관·심장질환은 만성고시질환(상병코드)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산정됨 → 만성고시질환 목록은 2014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p.173 하단 주석 참조

### 1-3. 자활사업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사전숙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근로능력 판정

→ 2014년 자활사업안내 p.13

구분	내용	대상자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	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및 직업재활법 제 2조 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적용</li> <li>-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부, 진료기록지 2개월분</li> <li>- 업무흐름도</li> </ul> <p>읍·면·동 → 행복e음 등록 →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p>
	③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세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li> <li>- 장애인복지법상 4급이내 장애인</li> <li>- 희귀난치성 및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확인자</li> </ul>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18세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 2014년 기준 만18세(199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014년 기준 만65세(1949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p>조건제시 유예자<sup>11)</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벽지거주 수급자</li> <li>• 북한이탈주민</li> <li>•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li> <li>• 12월 이하의 영아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li> <li>•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인 자</li> <li>• 외국인 수급자</li> <li>• 질병부상 등으로 자활사업이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사람</li> <li>• 시험준비생</li> <li>•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 수강생</li> <li>• 20세 이상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li> <li>•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li> <li>•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li> </ul> <p>조건부과 제외자<sup>12)</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 곤란한 사람</li> <li>• 대학생</li> <li>• 장애인</li> <li>• 임산부</li> <li>•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li> <li>•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li> <li>•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월에 한함)</li> <li>•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li> </ul>

11) 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임. 조건제시유예는불가피한조치이므로제한적인예외의경우에만시·군·구담당자의조사결과에따라시·군·구청장이결정한건에 한하여 적용함. 2014년 자활사업안내 p.33-34  
12)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임. 2014년 자활사업안내 p.21-23

- 자활사업대상자 관리
  - 자활사업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능력평가, 욕구 및 참여여건 사정 등을 통하여 적합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평가함
- 자활역량평가표(2014년 자활사업안내 p.32)에 따른 연령, 건강, 직업이력 및 학력, 구직욕구,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활계획을 수립함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	판정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의욕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대상자 (70점이상)
보건복지 자활사업	희망리본	희망리본수행기관	- 취업욕구가 강한 사람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점~69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프로그램 욕구가 강한 사람	
			- 임시·일용직 경험이 있는 사람	
			-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사람	
근로유지 형	시·군·구	- 간병·육아 등 가구 여건상 관내참여만 가능한 사람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자)	

→ 2014년 자활사업안내 p.31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자활사업 범위
  - 근로능력수급자 관리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욕구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 자활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자활고용팀에 의뢰 단, 근로유지 형 사업, 복지도우미(인턴도우미형)는 읍·면·동에서 사업 관리
  - 방문상담 강화 : 대 상가구별 분기 1회 방문상담과 연계하여 통합조사팀의 조건부과 제외자 반기조사 및 자활고용팀 조건부수급자 분기조사 협조
  - 조건부수급자 자활상담과 관련된 상담은 시·군·구 자활사업담당자(직업상담사)를 통해 자활사업계획 수립

2014

##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 II. 주요 복지사업

### 2. 차상위

- ☞ 한부모가족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
- ☞ 차상위장애인
- ☞ 차상위자활
- ☞ 우선돌봄차상위



## 2. 차상위

### 2-1. 한부모가족지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정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때는 만 22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교육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



\* 신청 처리 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 가능)

#### 신청대상

구분	내용	관련지침
지원대상	①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의 자녀 ② 조손가족인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의 손 자녀 ③ 청소년 한부모로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가족	'14년한부모 가족지원 사업안내 p.21



#### 구비서류

구분	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비고
공동 한부모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재학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14년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안내 p.3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공통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서  선택 - 지원서비스 선택(청소년 한부모 자립 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등)	-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활동 촉진수당 지원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서 * 선정 전 신청 시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선정 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신청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부모기준, 자녀 연령기준 등에 대하여 초기상담이 필요함
-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조손가족 제외)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관련지침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양육수당	'14년한부모 가족지원 사업안내 p.127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탈수급자 이행급여 중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선정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1.04%), 일반재산(월4.17%) <sup>13)</sup> ,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sup>14)</sup>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4	2,535,925
한부모 조손가족 (130%)	-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2,904,490	3,296,703
청소년 한부모 (150%)	-	1,541,126	1,594,942	2,446,230	2,898,783	3,351,335	3,296,703

13) 주거용재산 제외  
 14) 자동차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기준 준용함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구분 p.126	소득인정액 100% 이하		소득인정액 100% 초과 ~ 130% 이하	소득인정액 130% 초과 150% 이하
	국기초수급자	국기초비수급자		
아동양육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2세 미만)	×	○ (월7만원/1인)	×
	중고생 학용품비	×	○ (연5만원/1인)	×
	생활보조금	×	○ (월 5만원/1가구) 아동양육비(12세미만) <sup>15)</sup>	×
	추가양육비 (5세 이하)	×	○ (월5만원/1인)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가족(25세 이상)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 (월8만원/1인)	○(월 15만원/1인)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연 154만원 이내)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	○(실비)	○(실비)
	자신형성 계좌지원	○ (월5만원이하/1가구)	○ (월20만원 이하/1가구)	○(월20만원 이하 /1가구)
	자립촉진 수당	○(월10만원) 24개월 이하 자녀 있는 가구 <sup>16)</sup>	×	×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한부모가족은 법정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지원은 모두 받을 수 있음(차상위 관련 지원 참조)
- 한부모 세대가 이혼하여 친정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신청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한부모와 함께 책정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 적용되며,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임에 유의
- 자동차 기준 확인 할 것!!

15)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한가지 유형임. 따라서 소득인정액 13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의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함  
 16)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는 월 15만원 지원함. 다만, 소득인정액 130% 이하 가족에 대해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예산으로 7만원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예산으로 8만원 지원함

### 2-2.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



#### 신청대상자

구분	내용	관련지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 중 ①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② 만성질환자 ③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되는 날이 속하는 해) <sup>19)</sup>	'1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안내 p.4-5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외국인 배우자 포함)은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

17) 시·군·구 : 대상자·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 조사  
 18) 공단 : 질환, 연령(18세 미만) 등 변동사항 조사  
 19)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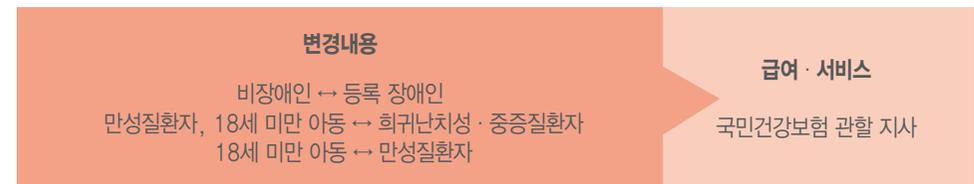


#### 구비서류

필수구비서류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한함)	관련지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진단서 <sup>20)</sup>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만 부양의무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재소증명서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무료임대확인서 - 재학증명서(필요시)	'1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안내 p.26-28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신청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 결정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결정방법 :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결과 및 진단서 등을 근거로 결정
- 적용시기 :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
-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종별 변경 신청



\* 종별 변경은 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단에서 장애등록여부나 건강보험 산전 특례 등록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 처리 가능!!

20) 만성질환일 경우에는 앞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기 할 것!!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li> <li>•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li> <li>•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li> <li>• 기초공제액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기준 공제액 2.5배 적용</li> <li>→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li> <li>• 2000cc미만의 자동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기준 적용</li> <li>→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용</li> </ul>
	부양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용</li> <li>- 단,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li> <li>-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부양능력 미약의 경우 부양비 산정은 불필요)</li> </ul>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 : 대상자는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7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7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 중 심뇌혈관질환자는 입원하여 1회 수술당 최대 30일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면제

- 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보험료 산정하여 지원함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및 읍·면·동에서 가능(2014. 7. 1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보장결정
- 기초적인 수급자 상담에서 해당되지 않은 대상자 중 의료비로 부담되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초기상담에 주력 필요
- 구비서류 진단서 받을 때 유의사항!!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 상 최종진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서는 불인정
  - (만성질환자)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상 최종진단과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 '소견서', '확인서'는 진단서 대체 불가
  - 진단서 제출 시 반드시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차상위계층 관련 지원받을 수 있음

### 2-3. 차상위장애인

등록 장애인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업무 흐름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증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계층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 (3-6급)장애인 • 단,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구비서류

신청서(공통)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에 준용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함 단, 부양의무자 조사 미 실시 등록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이며 소득인정액이 120%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함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조사내용 : 수급자 가구 내 소득 및 재산 등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소득·재산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소득조사 준용하나, 실제소득 산정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기초공제액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기준 공제액 2.5배 적용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차상위 장애인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에 준용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함 단, 부양의무자 조사 미 실시 등록장애

구분	급여내용		지원금액
경증장애수당	- 기초수급 및 차상위		월 30천원
	- 보장시설입소		월 20천원
장애아동수당	기초	중증	월 200천원
		경증	월 100천원
	차상위	중증	월 150천원
		경증	월 100천원
	보장시설	중증	월 70천원
		경증	월 20천원



-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차상위 장애수당 확인서) 발급가능(전국 읍·면·동 가능)

**2-4. 차상위자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에서 자활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

→ 2014년 자활사업안내 p.26~27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업무 흐름도**



**지원대상**

<b>지원대상</b>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자 중 자활근로 참여희망자
-------------	--



**구비서류**

신청서(공통)	구비서류(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li> <li>- 소득·재산신고서</li> <li>-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적등본</li> <li>- 임대·차계약서</li> <li>-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li> <li>- 소득·재산 확인서류</li> <li>-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li> </ul>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에 준용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함. 단, 부양의무자 조사 미 실시
- 차상위 참여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우선순위는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결정하되,
  -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신규신청 차상위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실제소득이 낮은 순으로 결정함
- 차상위 참여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소득을 재확인하며, 공적소득조사를 통해 기준 초과 확인 시 참여 중지
- 반기조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3월 간 자활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보장 중지
- 자활사업 참여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제한함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소득·재산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소득조사 준용하나, 실제소득 산정 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기초공제액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기준 공제액 2.5배 적용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 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차상위계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가능
- 관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단, 근로유지형은 참여 불가, 사회적 일자리와 인턴만 참여 가능)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발급가능(전국 읍·면·동)
- 차상위 관련 각종 혜택 가능
- 자활사업은 시장진입이 어려운 사회적 일자리인 가사, 간병, 청소, 돌봄 등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자활사업의 유형은 다양함

### 2-5. 우선돌봄차상위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2014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지원 사업안내)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



\* 신청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 가능)

**📎 지원대상**

<b>지원대상</b>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 자격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우선돌봄차상위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지 여부만으로 대상여부 판단함.
-------------	--



#### 구비서류

신청서(공통)	구비서류(필요시)	비고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p.14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기본원칙
  - 기존제도 우선 원칙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한부모 지원 등 기존 보호제도 우선 연계
  - 연계지원 :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책정대상자에 대해 정부 지원 사업, 지자체사업, 민간자원 등에 대해 연계지원 실시
  - 선정기준 단순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제도 제외 대상임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제외, 사적이전소득 제외 등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 대상자 발굴 및 조사

구분	지원대상	출처	비고		
행복e음	기초수급 탈락자	- 우선돌봄차상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행복e음	복지부 제공	
	독거노인				
	긴급지원				
	보육, 아동, 유아 학비				
	기타 행복e음 보유자료				
기타사회취약 계층	단전기구	- 6개월 이상 체납이 있었던 가구	한국전력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파악
	학비 및 급식비 미납가구	- 급식비 미납 가구 등 * 미납기간 등은 자율적 판단하되, 2학기 이상 미납 가구는 반드시 확인	지자체 (교육청)		
	단가스, 단수가구 및 체납가구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선정 * 미납기간 등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6개월 이상 체납 가구, 단 가스·단수 가구는 반드시 확인			
	- 지자체 보유 취약계층 명단 (건보료 소액납부 및 체납, 무허가건물·판자촌 거주, 연탄난방,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사례관리 대상 등)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b>소득·재산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수급자 범위와 동일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li> <li>- 행복e음 자료보유자 -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차상위 선정</li> <li>- 행복e음 자료미보유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과 더불어 우선돌봄차상위를 신청하도록 하여 소득재산 자료를 조회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li> <li>- 보장단위 : 가구단위 보장(별도가구 특례 불인정,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는 인정)</li> </ul>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우선돌봄차상위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2014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지원사업안내 p.45-46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양곡지원</li> <li>• 노인 안 검진 및 개인수술비 지원</li> <li>•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li> <li>• 푸드뱅크 연계</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성공패키지</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li> </ul>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 기회균형 선발</li> <li>• 국가장학금</li> </ul>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바우처</li> </ul>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방연료긴급지원</li> <li>• 전기요금긴급지원</li> <li>•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li> <li>•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li> <li>•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li> </ul>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능 무료입장</li> </ul>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소금융사업</li> <li>• 채무조정 분할상환</li> </ul>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li> </ul>	미래창조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통신 가입비 면제</li> <li>• 이동통신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면제(총 3만원 한도)</li> </ul>

\* 그 외 지자체별 지원 내역 상이하오니, 지자체마다 실시하고 있는 혜택 파악하여 숙지 필요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우선돌봄차상위 행복e음 입력 시“국민기초보장”과 함께 신청 필요
-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전국 읍·면·동 가능)
- 우선돌봄차상위는 다른 차상위계층과 지원내용이 다르니 주의 필요

## 차상위계층 공통지원내용

구분	내용
전기요금 할인	① 인터넷(cyber.kepco.co.kr), 팩스, 우편, 지점방문 등 (월 2천원 한도 할인) ② 구비서류 : 복지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③ 문의처 전화 (전화 123번) ④ 이사 등 거주지이 변동이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 신청 필요 ※ (주의) 우선돌봄차상위 미 해당
이동통신 할인요금	①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대리점(또는 지점)에 차상위 확인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 ② 할인내역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국내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의 35% 감면
정부 양곡 할인 구입	① 정부양곡(나라미)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1포대(20kg) 22,900원 ② 매달 1일~10일 읍·면·동 방문하여 현금구매 신청 또는 차상위 대상자 이름으로 계좌 입금 ③ 배달 : 구매한 달 20일~말일 택배로 배달
도시가스 요금할인	① 신청방법 : 고객센터 방문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가능(대리신청) 단, 공동주택 중앙난방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② 할인내역 : 주택용 도시가스 42.5/㎡원 ③ 구비서류 :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사본) ※ (주의) 우선돌봄차상위 미 해당
문화 바우처	①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a href="https://www.munhwa.nuricard.kr">https://www.munhwa.nuricard.kr</a> ) 신청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기준 한 세대 당 문화카드1매(연간 10만원 한도)발급 ③ 만6세~19세 <sup>21)</sup> 수급자/차상위계층 청소년(연간 5만원 한도)은 개인카드 발급

- \* 시·군·구별로 상이한 혜택이 있을 수 있음. 관련 혜택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확인할 것
- \* 우선돌봄차상위는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미 해당
- \* 자격확인 증명서 발급 안내
  - 차상위계층확인서 : 전국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읍·면·동 발급 가능



2014

##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 II. 주요 복지사업

### 3. 아동·청소년

- ✓ 영유아 보육지원
- ✓ 아이돌봄지원
- ✓ 아동급식지원
- ✓ 가정위탁지원
- ✓ 청소년증발급



### 3. 아동·청소년

#### 3-1. 영유아 보육지원

영유아 보육지원이란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0~만5세에게 지원되며 크게 양육수당(가정양육 시), 보육료(어린이집 이용 시), 유아학비(유치원 이용 시)로 구분, 이 중 양육수당은 농어촌,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보육료는 만0~2세, 만3~5세 누리, 다문화, 장애아 보육료로, 유아학비는 만3~5세 누리로 구분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업무 흐름도



- 처리기간 : 14일(30일 이내 연장 가능)
- 지급일 :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 지원대상 : 전 계층 만0~5세의 취학 전 영유아
  - \* 제외자 :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가능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에 한함
  - ※ 보호자나 후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신청 가능
- 지급방법 : 양육수당은 아동 또는 부모 등 명의의 계좌를 통해 현금지급으로 지급하며, 보육료는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급

→ 2014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61/ 2014년 유아학비사업안내 p.3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바우처 카드 신청 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서비스 이용자용)
  - 신청인(부모 중 한 명) 신분증
  - 통장사본
- 양육수당 신청 시 : 통장사본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의 지원은 바우처카드로 결제 처리
  - 보육료 신청 시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를 국민, 우리, 하나sk 금융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것인지, 읍·면·동에서 보육료지원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것인지 문의 후 접수처리
  - 유아학비 바우처카드(아이즐거운카드)는 반드시 농협, 부산은행 직접 방문 후 신청하도록 안내
  - ※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거래은행(농협·부산은행)에 방문하여 아이즐거운 카드 발급 가능
  - ※ 첫째 자녀가 사용했던 아이사랑카드 또는 아이즐거운카드는 둘째 자녀도 사용 가능(재발급 불필요)
- 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
  -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필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Fax 신청가능)
  - \* 출생 후 12개월 이후부터 48개월 미만까지 농어촌 양육수당 금액이 다소 높음
- 보육료(어린이집)는 시·군·구 관할 / 유아학비(유치원)는 교육청 관할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영유아 보육지원은 무상보육으로 전 계층 신청가능 및 정부지원의 100% 단가로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아동
  - 예외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보서 또는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I. 복지업무 관공예 보기 II. 주요 복지사업 III. 아동·청소년 4. 장애인 5. 노인 6. 긴급지원 7. 서비스연계 8. 타부처 사업 등 III. FAQ IV. 관련용어

I. 복지업무 관공예 보기 II. 주요 복지사업 III. FAQ IV. 관련용어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인등록 아동만 지원 가능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 자격(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을 구비한 농어업 가구 자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

→ 2014년 보육사업안내 p.310~325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은 받나요?

- 보육료 지원금액(2014년 연령별 기준) : 법정단가 100%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 0세	2013.1.1일 이후	39.4만원
만 1세	2012.1.1 ~ 2012.12.31	34.7만원
만 2세	2011.1.1 ~ 2011.12.31	28.6만원
만 3세	2010.1.1 ~ 2010.12.31	22만원
만 4세	2009.1.1 ~ 2009.12.31	
만 5세	2008.1.1 ~ 2008.12.31	

→ 2014년 보육사업안내 p.310

- 양육수당 금액(2014년 연령별 기준)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개월	20만원	20만원	20만원
12 ~ 23개월	15만원	17.7만원	
24 ~ 35개월	10만원	15.6만원	
36 ~ 47개월		12.9만원	
48 ~ 84개월		10만원	

→ 아동출생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가능 / 영유아 사망시 사망일까지 양육수당 지급

→ 2014년 보육사업 안내 p.325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정부지원 100% 법정단가만 지원하며 일부 사립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의 경우 법정단가 외 금액을 요구 할 수도 있음
- 영유아의 보호자가 서비스 간의 변경을 원할 경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사전에 “변경 신청 단계”를 거쳐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
-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 시 바우처카드도 변경 신청 필요
- 변경처리 기준

변경구분	지원내용		비고
	변경신고 15일 이전	변경신고 16일 이후	
양육수당 → 보육료	양육수당 미지급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지급 신청 익 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급 신청 월 보육료 미지급	양육수당 미지급 신청 월 보육료 지급	
양육수당 → 유아학비	양육수당 미지급 신청 일부터 유아학비 지급	양육수당 지급 신청 익 월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 →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급 신청 월 유아학비 미지원	양육수당 신청 익 월부터 지급 신청 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 → 농어촌 → 장애아	변경신청 신규서비스 지원	변경신청 신규서비스 익 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신청 서비스는 익 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신청 서비스는 익 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신청 서비스는 신청일 기준부터 일할 계산 후 지원		

- 영유아보육(보육료 · 양육수당)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금지
- 영유아보육(보육료 · 양육수당) ↔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취득 가능

→ 2014년 보육사업 안내 부록 p.68

### 3-2. 아이돌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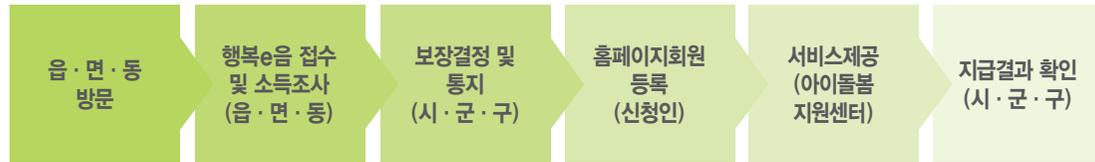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시간제 : 보육, 놀이 활동, 급·간식서비스, 등 학원, 안전, 신변 처리 등을 지원

종일제 : 이유식, 젓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지원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유형별 월평균 소득기준) : 가, 나, 다형(정부지원 대상자)**



**☞ 업무 흐름도(유형별 월평균 소득기준) : 시간제 라형(신청인 전액 부담 대상자)**



- 처리기간은 14일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나 맞벌이(직장보험가입자) 및 한부모 가구(직장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지원 대상자 유형이 가, 나, 다, 라형으로 소득기준으로 적용하나 시간제 라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신청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직접 아이돌봄지원사업 <https://idolbom.mogef.go.kr/> 에 회원등록 해당지역 서비스제공(아이돌봄지원센터)에 연락 후 서비스를 이용함

→ 2014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p.17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 사전숙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신청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성명이 동일하여야 함
- 서비스제공 가능한 아동 연령기준
  - 시간제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 생후3개월 ~ 24개월 이하
  - 장애아동 : 경증장애에 한해 돌봄 가능
- 2014년 아이돌봄지원 사업안내 p.22(경증장애 분류표 참조)
-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한 맞벌이 저소득, 일반가정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12세 이하 3명 이상,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장애자녀포함 아동 2명 이상 양육)
  - 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취업준비, 재학 중으로 인한 양육공백
  - 전업주부 저소득, 일반가정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적용
- 가구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적용 합산
  - 맞벌이 부부는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감경
- 정부지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가”형적용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까지	4인	5인	6인
가	50% 이하	2,141천원	2,418천원	2,521천원	2,623천원
나	50% 초과~70% 이하	2,997천원	3,385천원	3,529천원	3,673천원
다	70% 초과~100% 이하	4,281천원	4,836천원	5,041천원	5,247천원
라	100% 초과	-			

→ 201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26~28(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 참조)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시간제돌봄서비스(2014년기준) : 아동 1인 기준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기준)	돌보미 수당 시간제(천원/시간) 5,50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50% 이하(월241만원)	4,250원	1,250원
나	50% 초과 ~ 70% 이하(월338만원)	2,250원	3,250원
다	70% 초과 ~ 100% 이하(월483만원)	1,250원	4,250원
라	100% 초과	-	5,500원

- 정부지원 가, 나형 유형은 연간 720시간이며 정부지원 시간 초과 경우 전액 본인부담

■ 영아 종일제돌봄서비스(2014년 기준) : 아동 1인당 110만원(월200시간 이용 기준)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기준)	돌보미 수당 영아종일제(월110만원)			
		0세(15개월이하)		1세(16~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50% 이하(월241만원)	75만원	35만원	70만원	40만원
나	50% 초과 ~ 70% 이하(월338만원)	65만원	45만원	60만원	50만원
다	70% 초과 ~ 100% 이하(월483만원)	55만원		50만원	60만원
라	100% 초과	45만원	65만원	40만원	70만원

- 정부지원 시간 : 월120시간 ~ 월200시간 이하(1일 6시간 이상 사용 원칙)이며 초과 할 경우 본인부담

→ 201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35~36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액은 선납
-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돌봄서비스중복 불가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도 불가
- 시간제, 종일제 돌봄 이용시간이 심야(21시~8시) 및 공휴일 등에는 시간제 1천원, 종일제 10만원의 할증이 부여되고 이 할증금액은 가~다형 유형기준에 해당시 정부에서 라 형 유형 기준은 본인이 부담함

### 3-3. 아동급식 지원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 질병, 가출, 학대, 방임, 유기, 부양기피 및 거부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 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식사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



- 아동급식지원은 연중 지원대상과 여름·겨울방학기간 일시적 지원대상자로 구분
- 아동의 보호자, 이웃, 또는 관계인(예를 들어 학교 담임선생님)과 아동급식담당자의 직권신청가능
- 여름·겨울방학 일시적 지원대상자 신청은 각 학교에서 자체 홍보

→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p.145



#### 구비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호자(부모 등) 부재 확인관련 서류(예 재소자확인서, 고용주확인서, 진단서 등)

✓ **사전숙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급식지원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과, 지원 사유에 해당되는 증빙서 필요
  -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리 확인서

- 보장 가구원수는 동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이혼한 부모 제외, 행방불명된 부모 제외, 군복무 중 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제외, 20세 이상 형제자매는 선택으로 적용처리
- 신청조사 시 아동 및 보호자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감 방지에 유의하여 직접방문외 전화, 전자우편, 팩스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전년도 급식지원대상자(여름방학)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대상 적합여부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거쳐 급식 지원 계속 여부 결정(매년 5월~6월)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아동복지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6조)

#### (1)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도 포함)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부액)기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2014년 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784천원	23,960	4,496	24,620
		(25,529)	(4,790)	26,233
2인	1,336천원	40,244	20,861	40,705
		(42,880)	(22,227)	43,371
3인	1,728천원	52,014	37,208	52,563
		(55,450)	(39,645)	56,006
4인	2,120천원	64,087	57,308	64,818
		(68,285)	(61,062)	69,064
5인	2,512천원	75,950	77,176	76,909
		(80,925)	(82,231)	81,947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p.144(201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참조)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선택지원
  - (미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선택 지원
  - (취학아동) 조·석식 연중지원

〈중식지원〉

- ① 학기 중 중식 : 교육청(학교급식)
  - ②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자체 지원
  - ③ 방학 중 중식 : 지자체
- (급식형태) 지역여건 및 아동특성에 따라 선택 지원
    -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지원 등
  - (지원 단가) 1식당 3,000원 이상 지자체별 재정 상태에 따라 결정

→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p.145/166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연혁) '05년 지방이양, '09 ~ '10년 한시적 국고지원
  - '00년 결식아동에 대한 석식지원 시행(국비, 지방비 매칭)
  - '04년 교과부로부터 방학 및 토·공휴일 중식제공 사업 이관
  - '05년 아동급식 등 149개 사업(복지부 67개) 지방이양('04.7.6)
  - '09 ~ '10년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국고지원
- 아동급식지원대상자가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중복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확인하여 선택적용
- 연중지원대상자와 단기지원(여름, 겨울방학이용대상자)로 나뉘어지므로 시·군·구에서 읍·면·동에 분기별 예산소요액 신청 시 단기지원대상자를 예상하여 요청해야함
  - ※ 예산소요액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이
- 평소 아동급식지원대상자를 사전 파악해 놓음으로써 서비스 대상 아동 누락 방지
- 아동급식대상자 실태조사 시 가능한 가구방문을 통해 급식지원의 필요성 여부 확인과 동시에 위기가구 사전예방 및 발굴 역할수행 가능

### 3-4. 가정위탁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

→ 아동복지법 제3조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 업무 흐름도(일반 가정위탁)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
  - 단, 18세 이상 아동 중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교육생, 20세 미만 학원교육생, 보호대상
- 아동의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한 경우,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84이하인 자립능력 부족한 경우, 취업이나 그 외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하여 1년 연장한 경우 해당
-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전입절차 진행

→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p.72



#### 구비서류

- 대리 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신청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신청서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 보호대상 아동 조사서
  - 아동카드
- 일반가정위탁 신청
  -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 아동카드
  - 가족관계부 첨부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만2세 미만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
- 만18세 미만 요보호아동 발생시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아동 보호, 양육조치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
  -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장애, 성폭력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p.69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 가정위탁보호신청인 가정조사서, 보호대상 아동 조사서, 아동카드
  - \* 가정위탁보호자가 조부모에서 친인척으로 변경 시에도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필요
- 일반가정 위탁 : 보호대상아동발생시 가정조사 후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양육이 불가할 경우 보호대상 아동조사서, 아동카드, 가족관계부 첨부하여 일반가정위탁 의뢰

- 가정위탁보호신청 아동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전문가정위탁보호로 책정
  - 2세 이하 아동
  -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전문적,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일시 가정위탁 운영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로 일시가정위탁 보호조치 할 수 있음
  - 최대 15일 이내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p73, p77

- 가정위탁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 위탁아동의 종교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 가능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p.70

####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 국민기초수급자로 보장하여 생계비등의 지원
  -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아동 1인당 3,000천원 이상 지급(권고)
  -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 아동 1인당 3,000천원 이상 지급(권고)
  -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료 1인당 년 7만원이내
  - 심리치료비 지원 : 심리정서치료비(월20만원), 심리검사비(1회 20만원), 교통비 월2만 이내
- 가정위탁보호자
  - 월 12만원 양육수당 지급
    - 단, 전문가정위탁보호자는 월 30만원 이상 양육수당, 일시가정위탁보호자는 보호일수 산정 비용 지급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p.84 ~ 86



#### 업무 Tip

#### 알아두면 좋아요.

- 가정위탁보호는 보호아동이 만18세 이상이 되거나, 보호자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경우 보호 종결
  - 단, 형제자매 중 1인이 18세 이상 되어 종결되더라도 동생은 계속 유지
  - \*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귀가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소견서 송부 받아야 함
- 가정위탁 보호기간 연장은 보호아동 만18세 도달 해 1~2월 연장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로 요청
-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
  - 보호아동이 위탁가정 소재지로 전입절차 후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양육보조금과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계비 등을 지원
- 수급자 조건 충족 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을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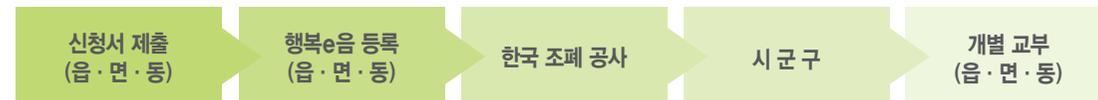
### 3-5. 청소년증 발급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해당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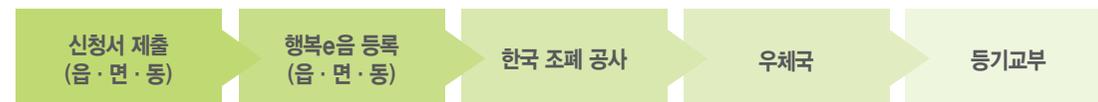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

【방문수령 신청】



【등기수령 신청】



- 발급 처리기간 : 14일 이내
- 청소년증 발급신청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본인 외 신청이 불가함

→ 2014년 청소년사업안내 p.63



#### 구비서류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전숙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청소년증 등기 수령가능 : 등기요금(3,100원) 본인 부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2014.6.19.)

- 청소년증 신청 접수 후 발급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2회 발송)로 알려주는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서비스에 대해 안내하여 신청 시 요청
- 청소년증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발급 가능

→ 2014년 청소년사업안내 p.62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 능이용시설 : 50%
  - 박물관, 공원이용 : 면제~50% 내외
  - 미술관, 유원지, 공연장이용 : 30~50% 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 \* 상기 할인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014년 청소년사업안내 p.58



####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청소년증은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신분증임을 유념
- 청소년증 교부는 가족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
- 청소년증 신규신청은 해당 읍·면·동에서만 신청하여야 하나 재발급 신청은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가능
- 청소년증 신청의 본인 여부 확인은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거나 인근 주민에게 문의하는 방법으로 함

→ 2014년 청소년사업안내 p.62 ~ 64

2014

##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 II. 주요 복지사업

### 4. 장애인

- ☞ 장애인등록
- ☞ 장애인 서비스 연계 지원
- ☞ 장애인연금
-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 ☞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 ☞ 장애인활동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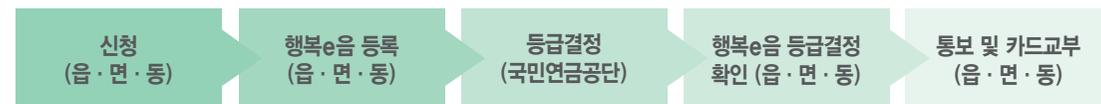
### 4. 장애인

#### 4-1. 장애인등록

장애인이란 몸이나 마음에 장애나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



- 심사처리기간 : 21일
- 신청인 : 본인 및 보호자가 신청대행 가능하며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7급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한 부위에 한해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며 다른 장애부위 경우에 한해 장애등록 가능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 p.45



#### 구비서류

- 장애종류는 15종이 있으며 장애종류에 따른 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각기 상이 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한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안내문”을 확인하여 해당유형별 심사서류 교부

####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 후 접수
-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자료 요청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신청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적, 자폐 4만원, 기타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지원 : 수급자 또는 차상위(기존 장애인이며, 서비스 재판정 또는 의무재판정자)
- 장애인신청 유형 구분
  - 신규 : 최초 신규신청 및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의사지정 및 의무재판정)
  - 직권재판정 : 시·군·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 실시
  - 서비스 재판정 :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조정 : 등록장애인이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조정 신청하는 경우
  - 이의신청 :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 p.46 ~ 49

####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장애인 등록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은 해당 지역 국민연금공단에서 구비서류 및 직접진단에 따른 심사 완료 후 결정
- 장애종류 (15종)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 지체장애 유형별 구분 : 절단, 상하지관절, 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하지관절습관성탈구, 상하지기능, 척추교정술, 강직성척추질환, 변형장애
  - 뇌병변장애 유형별 구분 : 뇌출혈, 뇌경색, 뇌성마비, 파킨슨병
  - 시각장애 유형별 구분 : 시력, 시야
  - 청각장애 유형별 구분 : 청력, 평형기능장애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 p.76 ~ 87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 약75종

지원내용	신청장소	신청서류	비고
교통카드	농협(시·군·구상이)	복지카드	65세 미만 해당
철도&항공&여객선 요금할인	기차역, 해당항공사 해운조합	복지카드	
이동, 유선통신 요금할인	통신사(대리점)	장애인증명서(읍·면·동)	
초고속인터넷 요금 할인	해당회사 (SK, KT, LG 등)	장애인증명서(읍·면·동)	
전기료&도시가스 할인 (1~3급)	한전 지역별도시가스지점	전기요금고지서, 복지카드, 등본	일부지역 관리사무소에서 대행
TV 수신료면제 (시각, 청각장애인)	한전	전기요금고지서, 복지카드, 등본	일부지역 관리사무소에서 대행
차량구입 시 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시·군·구 차량등록 팀	복지카드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1~3급)	시·군·구 세무과	복지카드	승용차 2000cc 이하 승합 12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등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주차가능 or 주차불가)	읍·면·동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고속도로할인카드발급 (50% 할인, 표지발급 차량에한함)	읍·면·동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수수료 4천원)	승용차 2000c 이하 승합 12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등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공단	의사발행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읍·면·동)

※ 위 지원내용은 주요 지원제도로 그 외 내용은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 p.20~39 참조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사망, 해외이주, 장애등록 취소, 장애복지카드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등록 가능하나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지등은 인정 불가사망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발급 가능(행복e음 진단내역등록에 사망처리 적용 시)
  - \* 행복e음 증명서 발급 시 용도부분에 “사망시수급자임 증명” 문구 자동 적용
- 신청인이 거동 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할 경우 “진료기록 직접 확보서비스”제공 요청 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 진료기록 직접 확보 서비스 가능 :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초음파, CT, MRI 등 방사선 사진 및 판독지 등
- 장애등급결정 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2차)까지 가능하며 이의 신청 심사결과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
-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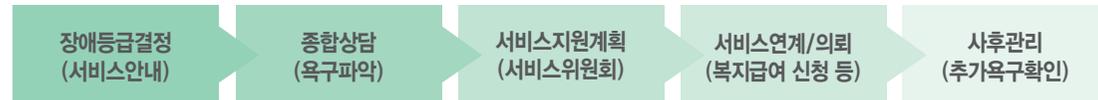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b>지체(척수)장애</b>	지체장애 중 척수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 척수장애는 장애진단서 내용 확인 필요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b>지체(변형)장애</b>	왜소증(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b>뇌병변장애</b>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 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b>시각장애</b>	각막이식수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 마다 재판정 (백내장 수술 후 6개월 후)
<b>평형장애</b>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b>지적장애, 자폐성장애</b>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b>정신장애</b>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b>신장장애</b>	매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은 제외
<b>호흡기장애, 간장애</b>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b>장루, 요루장애</b>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재판정에서 제외
<b>간질장애</b>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b>심장장애</b>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행복e음을 통해 추출된 재판정시기 도래자라 할지라도 재판정 필요 사유에 대한 검토 후 재판정 통보

### 4-2. 장애인 서비스 연계 지원

신규 및 기존 장애등록을 하신 분에게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전문 상담사가 초기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연계하는 사업

업무 흐름도



사업수행지역 (47개 지자체)

거주지	국민연금지사	연락처	거주지	국민연금지사	연락처
서대문구, 마포구	서울북부지역본부	02)2176-9869	서구, 논산시, 계룡시	대전지역본부	042)480-4861
도봉구, 노원구	도봉노원	02)2211-2813	천안시, 아산시	천안아산	041)550-8953
고양시	고양	031)920-5474	서구,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광주지역본부	062)958-2120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구리남양주	031)550-5865	전주시, 완주군	전주완주	063)270-5337
강동구, 하남시	강동하남	02)480-8827	달서구	대구지역본부	053)589-4583
구로구, 금천구	구로금천	02)2085-1499	수성구, 중구, 경산시, 청도군	대구수성	053)750-9112
수원시	경인지역본부	031)229-4076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구미	054)450-8594
성남시	성남	031)778-0322	부산진구, 연제구	부산지역본부	051)797-7047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남인천	032)770-3520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동부산	151)610-6416
부평구, 계양구	부평계양	032)500-8164	창원시, 창원군	창원	055)278-9071

※ '15년 전국확대 추진

서비스 신청 및 방법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전화로 상담신청을 하시면**  
 장애인복지를 전문적으로 상담·안내하는 복지플래너가 상담일정을 예약하는 등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도와드립니다.

### 4-3.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업무 흐름도



\* 위탁심사 미 실시 대상은 장애인등록 업무수행절차 확인 요

- 처리기한 : 14~60일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대상 : 중증 1~2급, 3급 중복장애인 18세 이상 장애인
-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위탁심사 완료 된 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위탁 미심사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신청과 동시에 위탁심사 신청가능)
- 장애위탁심사 면제자
  - 65세 이상 대상자
  - 종전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으로 기 장애등급심사 완료 자
  - 1급 뇌병변장애인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 1급 지체장애인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 1급 지적 장애인으로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VI p.27~30, p.73~74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신청자의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중증장애인 본인명의로 금융회사계좌통장사본 (예외)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로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이 경우 증빙 서류 징구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 중증장애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추가 제출서류(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재산확인 : 전·월세임차계약서, 조합원입주권 또는 청산금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부채확인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각1부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초·중·고·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는 장애인 연금 신청 불가(장애아동 수당 대상)
- 장애인연금의 종류
  - 기초급여 : 근로능력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 해 주기 위해 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
- 기초급여
  - 급여액 : 20만원('14.7월~), '15년 이후부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인상분 반영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2014년 7월 시행적용)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기초급여액에 20% 감액지급
- 초과분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못 받는 자와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부가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 적용하지 않음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VI p.12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만 해당
- 기초급여(18~64세)
  - \* 2014년 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 소득 합계\*)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공제\*\*)
  - \* (기타 월 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48만원) × 3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 + 자동차 + 기타증여재산 - 부채)의 재산에 따른 환산액이 있음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월] + (고급자동차, 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
  - ※ 고급자동차 : 3천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
- (단독가구 수급)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인 대상으로 2만원 단위로 기초급여액 지급

소득인정액	69만원 미만	69만원 이상 ~71만원 미만	71만원 이상 ~73만원 미만	73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77만원 미만
기초급여액	20만원	18만원	16만원	14만원	12만원
소득인정액	77만원 이상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 ~83만원 미만	83만원 이상 ~85만원 미만	85만원 이상 ~87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39.2만원 이하인 대상자로 2만원 단위로 기초급여액 지급

소득인정액	121.2만원 미만	121.2만원 이상 ~123.2만원 미만	123.2만원 이상 ~125.2만원 미만	125.2만원 이상 ~127.2만원 미만	127.2만원 이상 ~129.2만원 미만
기초급여액	20만원	18만원	16만원	14만원	12만원
소득인정액	129.2만원 이상 ~131.2만원 미만	131.2만원 이상 ~133.2만원 미만	133.2만원 이상 ~135.2만원 미만	135.2만원 이상 ~137.2만원 미만	137.2만원 이상 ~139.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39.2만원 이하인 대상자로 4만원 단위로 기초급여액 지급

소득인정액	111.2만원 미만	111.2만원 이상 ~115.2만원 미만	115.2만원 이상 ~119.2만원 미만	119.2만원 이상 ~123.2만원 미만
기초급여액	20만원	18만원	14만원	12만원
소득인정액	123.2만원 이상 ~127.2만원 미만	127.2만원 이상 ~131.2만원 미만	131.2만원 이상 ~135.2만원 미만	135.2만원 이상 ~139.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0만원	8만원	4만원	2만원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인정액 조사방식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2014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 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 : 2,690,734원)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VI p.43~67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초급여(2014년 7월 기준적용)

구분	차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8만원초과	16~18만원	14~16만원	12~14만원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00,0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8~10만원	6~8만원	4~6만원	2~4만원	2만원이하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8만원초과	24~28만원	20~24만원	16~20만원	
	320,00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12~16만원	8~12만원	4~8만원	4만원이하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부가급여('14년 7월~) : 2~28만원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8만원	28만원 <sup>1)</sup>
보장시설수급자(일반)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7만원 <sup>2)</sup>
차상위계층(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4만원 <sup>3)</sup>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 28만원 지급
-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VI p.8~13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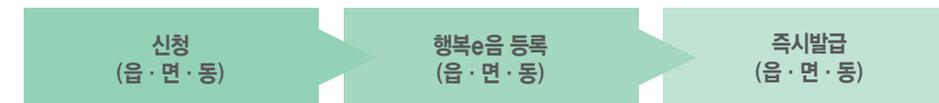
- 장애인연금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 압류방지 전용통장(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가능
- 2014년 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동일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에 따른 특례 적용이 있음
  -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 2010년 7월1일 이전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
  - 부가급여 특례자
  - \* (보장시설 수급자 특례) 2010.7.1.당시 만65세 이상인 자(1945.6.30.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2010.7.1.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65세 이상인 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계속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 장애인이 아닌 신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장애인 연금 중지

### 4-4.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함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



- 처리기한 : 즉시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신청가능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대여 불가, 차량번호 변경시 기 발급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반납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I p.141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 자동차등록증
- 운전면허증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서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단체, 전담어린이집 및 특수학교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본인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된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II p.136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장애인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장애인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본인용” 표지발급 원칙
    -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발급
    - \*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그 외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및 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용”으로 구분
  -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른 표지발급 : 주차가능, 주차불가
    - 보행상 장애기준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II p.160 보행 장애 유무 기준표 참조
- 중복장애일 경우 각각 장애유형별 등급 중 하나가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될 경우 “주차가능”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구분	명목자	명목자	
		본인	보호자
A형 (기본)	보행장애 ○	본인용 “주차가능” 	보호자용 “주차가능” 
	보행장애 ×	본인용 “주차불가” 	보호자용 “주차불가” 
B형 (재외동포 및 외국인)	보행장애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본인용 “주차가능” 	재외동포 및 외국인 보호자용 “주차가능” 
	보행장애 ○	대여 및 리스차량 본인용 “주차가능” 	대여 및 리스차량 보호자용 “주차가능” 
보행장애 ×		대여 및 리스차량 본인용 “주차불가” 	대여 및 리스차량 보호자용 “주차불가” 
D형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보행장애 ○	장애인시설, 단체 및 기타 기관용 “주차가능”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II p.139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 “주차가능”으로 발급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대상자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에 따른 감면
  -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할인은 해당 지자체, 기관 규정에 따라 다름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독거 장애인이 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 사유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 친척, 친구 중 1인을 보호자로 지정하여 “보호자용”으로 발급
-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본인용”으로 발급

### 4-5.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등록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받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발급받는 카드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



- 발급처리기간 : 약 30일
-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는 <http://www.e-hipass.co.kr:8888>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발급 시스템)를 통해 지문등록 전산정보입력 필요하며 이는 전국 읍·면·동 외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에서도 가능
- \*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발급 시스템은 회원가입 후 시·군·구 장애인담당자로부터 승인처리 후 사용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I p.248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 자동차등록증
- 발급수수료 4천원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된 차량여부 확인
- 장애인 감면 차량 해당 여부 확인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등록 장애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 배기량 2000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용2 또는 RV)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I p.247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고속도로 일반차로 : 50% 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
  -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할인가능
- 하이패스 차로 : 50% 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
  -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고 여기에 하이패스카드를 삽입
  -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여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할인가능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I p.246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는 판매업체에서 장애인 개인이 구입하고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에 차량 정보입력 필요
  - 판매업체의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사항 : 장애인의 성명, 차량정보, 연락처
  - 판매업체

제조사	주소	연락처
하이게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3	1599-0000
아이트로닉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16-1	1588-7064
서울통신기술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244	1588-4141
비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88-0000

-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이용 도중 차량번호를 교체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후 판매 대리점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사무실에서 단말기 차량정보 변경
- 지문정보 입력 시 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의 차량정보와 판매 업체에서 입력한 감면단말기 차량정보를 확인하여 동일한 경우 지문정보 등록 업무를 수행
- 행복e음에서 고속도로할인카드 전송 후 할인카드 내역조회 확인하여 전송여부를 체크할 것
- 입력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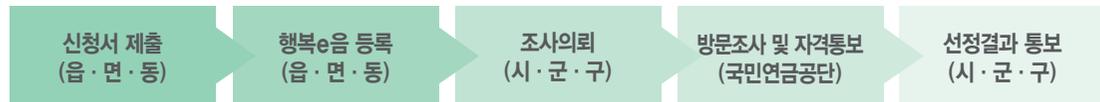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I p.252

### 4-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



- 처리기한 : 30일 이내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 다만 활동지원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가능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 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급여자, 시설입소자, 30일 이상 입원증인자,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재외동포외국인의 장애인등록자, 비슷한 타급여자(가사간병, 노인돌봄 등)
  - 20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등급을 받은 사람 (위탁심사제외자 장애인연금 위탁심사제외자와 동일 참조)
- 활동지원신청과 동시 바우처카드발급을 신청하여 신청자가 바우처카드를 수령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추가급여 : 활동지원 신청인이 추가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급여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예)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호자일시부재(보호자의 결혼, 출산, 입원 등)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V p.8 추가급여 수급요건표 참조
- 긴급활동지원 신청 : 수급자(만6세 이상~65세 미만의 1,2급 장애)가 가족의 사망, 가출, 시설입소, 천재지변, 화재, 보장시설퇴소 등으로 돌봄 가족이 없거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 하여 신청
- 복지포(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신청이 가능(신규, 갱신신청만 가능)
- 읍·면·동 외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신청가능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V p.3~5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서비스 이용자용)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여부는 읍·면·동에서 확인 필수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본인부담금은 선납(납부),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되어야 바우처 생성
- 업무수행절차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시 활동지원 급여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조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처리)
- 방문조사에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및 특기사항 등 조사결과서가 시·군·구청 장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로 활동지원 등급, 월 한도액, 유효기간이 결정됨
- 본인부담금 산정은 건강보험료 액으로 산정(국민기초수급자는 면제,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은 2만원)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V p.2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가구 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참조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경우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
  - 단, 인정점수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만65세 이상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자만 신청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되어 활동지원급여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정조사 미 실시(유효기간을 2년

I. 복지업무 관련 안내 보기 II. 주요 복지사업 III. FAQ IV. 관련용어

I. 복지업무 관련 안내 보기 1. 저소득층 2. 차상위 3. 아동·청소년 4. 장애인 5. 노인 6. 긴급지원 7. 서비스연계 8. 타부처 사업 등 III. FAQ IV. 관련용어

또는 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경우 신규 신청자로 처리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V p.35

■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470점	1,010,000원
2등급	320~379점	810,000원
3등급	260~319점	610,000원
4등급	220~259점	410,000원

- 추가급여

구분(인정점수)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1인가구/ 취약가구	400점 이상	2,341,000원	학교생활	86,000원
	380~399점	684,000원	직장생활	342,000원
	380점 미만	171,000원	보호자일시부재	171,000원
출산가구		684,000원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624,000원
자립준비		171,000원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V p.61

■ 본인부담금 산정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권자, 차상위계층 : 2만원 정액
- 차상위초과계층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합산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 원)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0,000원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6%	24,600	36,600	48,600	60,600
	100% 이하	9%	36,900	54,900	72,900	90,900
	150% 이하	12%	49,200	73,200	94,500	
	150% 초과	15%	61,500	91,500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 원)

구분	본인부담율	86천원	171천원	342천원	624천원	684천원	2,341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2%	1,700	3,400	6,800	12,400	13,600	46,800
	100% 이하	3%	2,500	5,100	10,200	18,700	20,500	70,200
	150% 이하	4%	3,400	6,800	13,600	24,900	27,300	93,600
	150% 초과	5%	4,300	8,500	17,100	31,200	34,200	117,000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V p.64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활동보조
  - 신체활동 : 개인위생, 신체기능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외출 시 동행
  - 그 밖의 제공 :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만6세 이하),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V p.55~60



## 업무 Tip

## 알아두면 좋아요.

- 활동지원 인력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수행에 제한이 있어
  - 활동지원 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 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 활동지원 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단, 수급자가 섬, 외딴곳에 거주하여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경우, 활동지원 인력이 부족한 지역(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음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갱신 신청함
  - 단,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은 2회부터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
- 시·군·구의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수급자는 이용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
- 하나의 바우처 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급여종료 후에도 카드보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http://www.socialservice.or.kr)) 또는 ARS(☎1644-9911)에서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조회가능

2014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 II. 주요 복지사업

### 5. 노인

- ☛ 기초연금
- ☛ 노인돌봄서비스
- ☛ 개장신고 및 허가



### 5. 노인

#### 5-1. 기초연금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2014년 7월 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 시행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업무 흐름도



- 처리기한 : 30일~60일
- 지급일 : 매월 25일
  - ※ 기존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신규 신청 불필요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수시 신청가능
- 신청자격(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며 주민등록 있는 자(복수 국적자 포함)
  - 외국인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국적 배우자
  - 국외(해외)이주신고 후 주민등록말소 미 처리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부여 받은 자
  - \* 거주불명등록을 한 자도 신청 가능
  - \* 제외자 : 행방불명자, 실종자, 해외체류 60일 이상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인 자, 타국가의 시민권자로 국적 상실자, 해외거주로 인한 영주권자의 주민등록 말소자
- 대리인
  - (위임장 불필요) 배우자
  - (위임장 필요)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 ※ 기초연금 담당자 대신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는 주소지 무관하게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일주소 자녀만 신청 가능)
  - 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3 ~ 11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 본인에게 반드시 유선등으로 위임여부 확인 필 / 확인 어려울시 신청접수 불가 / 치매등 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등 제출로 신청가능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통장사본(본인명의로 원천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명의 금융계좌가능)
- 추가서류 : 재산(전월세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부채(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기타(무료임대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신청서 작성 중 상담 체크사항
  - 연령
  - 본인, 배우자의 거주여건 확인(사실상 혼인·이혼 관계 등)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지급여부 확인
  - 신청자의 소득재산사항 중 주거여건(자가, 전월세, 무료임차 여부확인)에 따른 서류 징구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부채 등의 경우 상담 하여 서류 징구
  - 신고의무안내(결혼, 이혼,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교정시설입소, 소득재산변동, 통장계좌변경 등)
- 사실이혼관계 확인
  - 배우자와의 관계 적용 시 법률혼, 사실혼, 사실 이혼 중 적용처리
  - 본인 및 배우자 모두에게 이혼상태에 동의하여야 하며, 사실이혼관계확인서(자녀 또는 이통 반장) 징구
- 외국인 배우자 또는 국외이주 및 재외국민 배우자
  - 고유식별번호(외국인등록번호, 말소 전 주민등록번호, 신고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부부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적용(조사대상 포함)

-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경우는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적용(조사대상 제외)

→ 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13,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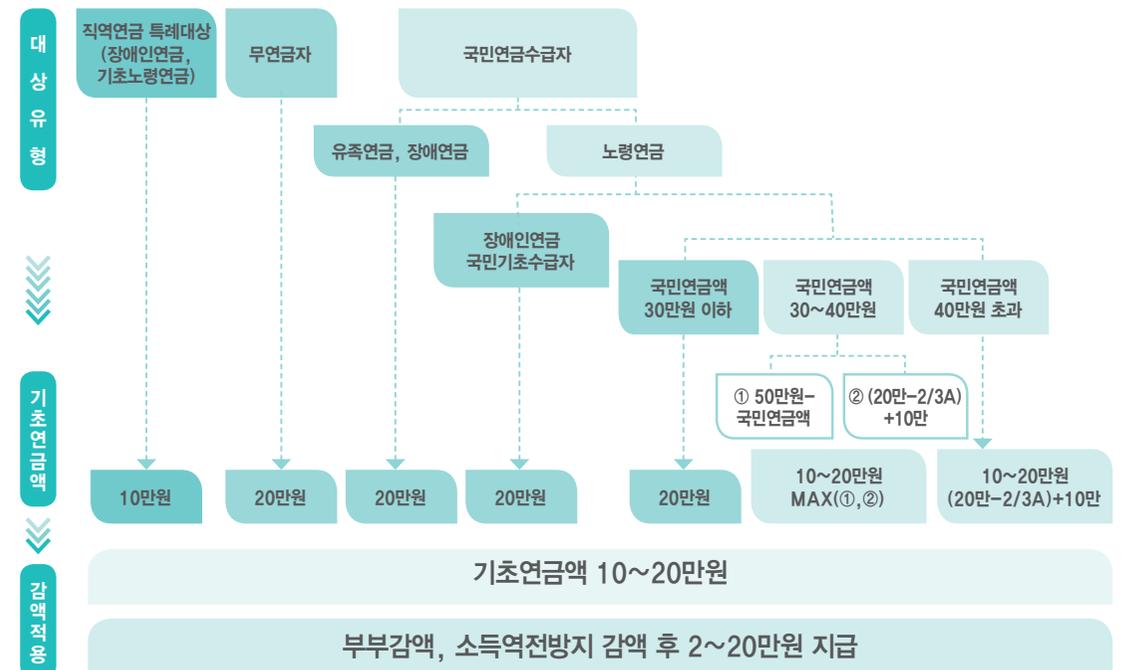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연령요건 : 만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1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의 합계
  - \* 월 소득평가액 =  $\{0.7 \times (\text{근로소득} - 48\text{만원})\} + \text{기타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48만원 공제 후 30%추가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 + 자동차 + 기타증여재산 - 부채)의 재산에 따른 환산액이 있음
  -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 - 2\text{천만원}) - \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div 12\text{월} + P$
  - \* P값 : 고급자동차(3천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직역연금 기준
  - 원칙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제외
  - 예외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자,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서 수령 후 5년 경과자
  - 특례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 \* 직역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 직역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가 되는 경우, 65세 도달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표 : 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의 소득재산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재산 (주택)만 보유	대도시	3억 1,680만원	4억 4,208만원
	중소도시	2억 7,680만원	4억 208만원
	농어촌	2억 6,680만원	3억 9,208만원
금융재산만 보유		2억 2,880만원	3억 5,408만원
근로소득만 보유	홀벌이	172만2천원	246만8천원
	맞벌이	-	294만8천원
일반재산 + 금융재산 보유	대도시	3억 3,680만원	4억 6,208만원
	중소도시	2억 9,680만원	4억 2,208만원
	농어촌	2억 8,680만원	4억 1,208만원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금액 결정 개요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A급여액등에 의하여 산정된 개인별 연금액

① 기초연금액(국민연금수급자) = (20만원 \* - 2/3 × A급여액) + 10만원 \* \*

\* 2014년도 기준연금액 / \* \* 2014년도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

**국민연금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행복e음을 통해 조회가능**

② 기초연금액(연계연금수급자) = 20만원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1/2) + 10만원

- 기초연금 급여액 :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 월급여액
- 기초연금 실질급여액 : 기초연금 급여액에 전월 소급지급 분 가산, 환수금액 감액 등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기초연금대상자일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83 ~ 99

-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단독 혹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사례1**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2만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4만원인 경우

- 산정된 기초연금액 12만원, 소득인정액 74만원 구간의 기초연금액 14만원
- 둘 중 작은 금액인 산정된 기초연금 12만원이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사례2** 부부 기초연금액이 남편 20만원, 부인 10만원 / 부부2인 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 114만원인 경우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24만원(16만원 + 8만원)
- 소득인정액 114만원 구간의 금액 : 28만원
- 둘 중 작은 금액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24만원으로 결정(남편16만원, 부인8만원)

- 기초연금급여액 :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후 2~20만원 지급

→ 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94 ~ 99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조사기준은 단독 혹은 부부로 조사하나 급여기준은 개별
- 압류전용방지 통장 :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이자까지 가산하여 원금과 함께 환수
- 국민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공적소득으로 전액 적용되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국민기초 수급 보장이 중지될 경우도 있으니, 국민기초수급자와 상담 후 기초연금 결정

### 5-2. 노인돌봄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업무 흐름도



- 방문, 주간보호 서비스 :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시·군·구청장 인정 자(장애1~3등급 또는 중증질환의 차상위계층 이하)
- 단기가사서비스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 부부 중 골절,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제출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p.81 중증질환자 상병코드표 참조
  - ※ 제외자 : 자격기준부적합자, 입원중노인, 보장시설입소자,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가사간병등)
  -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p.78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서비스 이용자용)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본인부담금은 선납
- 본인부담금 산정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로 산정
- 가구원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표에 관계없이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 포함
-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p.86~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참조
-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변동주기(5월, 11월)에 따라 연2회(6월, 12월) 확인조사 실시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우선순위
  - 방문, 주간보호서비스

순위	대상자 특징	건강기준
1	독거노인	장기요양등급외 A
2	치매질환자	장기요양등급외 B
3	기타 노인성 질환자	

- 단기가사서비스 : 독거노인이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보다 우선순위
- 자격 및 소득기준 : 장기요양등급 A, B자 및 중증 질환, 골절수술자의 전국가구 150% 이하
-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p.83

■ 본인부담금 산정(단위 : 원)

서비스유형 및 시간	기초수급자 (가형)	차상위계층 (나형)	차상위초과 ~100% 미만 (다형)	100% 이상 ~130% 미만 (라형)	130% 이상 ~150% 이하 (마형)
방문	27시간(9일)	무료	18,000	37,000	42,000
주간	36시간(12일)	8,280	24,000	49,000	56,000
단기 가사	24시간(1개월)	무료	16,000	33,000	38,000
	48시간(2개월)		32,000	66,000	76,000

→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p.97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 유형

- 방문서비스 (월27시간, 36시간) : 식사, 세면, 의복입기, 화장실이용, 외출동행, 청소, 세탁 등
- 주간보호서비스(월27시간(9일), 36시간(12일)) : 물리, 작업, 언어치료등의 기능훈련, 급식, 목욕 등
- 단기가사서비스(월24시간) : 식사, 의복입기, 외출동행, 취사, 청소, 세탁 등(의료인행위 불가)

→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p.75

■ 등급에 따른 서비스

- 방문, 주간보호서비스

구분	27시간(9일) A형	36시간(12일) B형
기초생활수급자	A-가형	B-가형
차상위계층	A-나형	B-나형
차상위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미만	A-다형	B-다형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상 ~ 130% 미만	A-라형	B-라형
전국가구평균소득 130% 이상 ~ 150% 이하	A-마형	B-마형

- 단기가사서비스

구분	24시간(1개월)단기1형	48시간(2개월)단기2형
기초생활수급자	단기1-가형	단기2-가형
차상위계층	단기1-나형	단기2-나형
차상위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미만	단기1-다형	단기2-다형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상 ~ 130% 미만	단기1-라형	단기2-라형
전국가구평균소득 130% 이상 ~150% 이하	단기1-마형	단기2-마형

→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p.89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등급변경 : 소득 및 가구여건의 변화로 인한 본인부담금 등급변경
  - 본인 신청 및 담당자의 직권에 조사결정(서비스 시간 등급변경은 본인이 신청)
  - 시간등급 변경에 따라 본인부담금 액수가 변경되므로 변경된 본인부담금을 입금해야 바우처 생성됨
-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서비스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 수급자는 이용안내문, 홈페이지(necs.socialservice.or.kr)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제공 선택 후 계약
- 입원 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불가(입원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 시·군·구 예산액에 따라 지원가능하며 예산부족시 대기자로 관리

→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p.97

-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신청 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대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신청절차 : 신청서 →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 → 통보 → 대상자 이용계약 후 급여제공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 급여이용대상 :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 급여 종류 : 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등급 체계(요양인정 점수에 의한 등급구분)

1등급 (95점이상)	2등급 (75~94점)	3등급 (60~74점)	4등급 (51~59점)	등급외A 5등급 (치매특별등급 45~50점)	등급외B (40~44점)	등급외C (39점 이하)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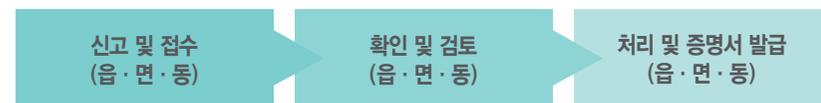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는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에서 대리 접수 가능

### 5-3. 개장신고 및 허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고 동그렇게 흙을 쌓아올리거나 비석을 세워 표시한 곳) 또는 봉안시설(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 시도지사 및 시·군·구, 사설로 구분)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업무 흐름도(개장신고)**



**업무 흐름도(개장허가)**



- 개장신고 처리기한 : 2일
  - 개장허가 처리기한 : 3일
  -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http://work.ehaneul.go.kr>)에 입력
    - ※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시·군·구 묘지담당자로부터 승인처리 후 사용가능
- 2014년 장사업무안내 p.45, p.48



#### 구비서류

- 개장신고 : 개장신고서,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 개장허가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개장신고
    -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현재 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있는 장소)와 개장지(새로 옮기는 장소) 2곳에 각각 신고
  - 개장허가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 ①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예정 3개월 전에 연고자에게 서면통보 후 협의 후 개장신고
  -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예정 3개월 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 공고 시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신고 처리
- 토지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또는 묘지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①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예정 3개월 전에 연고자에게 서면통보 후 협의 후 개장신고
    -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예정 3개월 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에 다시 할 것
      - ※ 공고 시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신고 처리
- 2014년 장사업무안내 p.49~51
- 개장신고 위반 시 벌칙
    - 미 신고자에게 100만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징수 절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진행
      -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
    - 이의제기 시 과태료 재판 결과 후 처리
    - 불복절차 및 방법 : 과태료 처분 불복 시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 이의제기 시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보
      -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실시
  - 개장허가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분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통보,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4년 장사업무안내 p.46~47

- 개장허가 시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 봉안기간 10년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함
  -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장신고 후 개장처리
  - 해당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매장 또는 봉안하여야 함

→ 2014년 장사업무안내 p.49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분묘기지권 :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건이며,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권리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다툼(소송 등)으로 해결
- 개장허가 신청서류 중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의 의미는 토지소유자등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입간판 설치, 일간신문, 홈페이지 공고 또는 인근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연고자를 찾기에 노력하였는데도 그 연고자를 알지 못한 사유
- 개장신고 시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록해 놓고 현장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
  - 개장분묘가 바뀌었을 시 분쟁 우려 있음

###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개장허가 시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 봉안기간 10년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장신고 후 개장처리
  - 해당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매장 또는 봉안

→ 2014년 장사업무안내 p.49



2014

##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 II. 주요 복지사업

### 6. 긴급지원

- ☛ 긴급지원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 6. 긴급지원

### 6-1. 긴급지원

위기사항에 처한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해소와 빈곤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先(선)지원 後(후) 조사 방침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업무 흐름도



- 신청자격 : 최근 6개월 이내 위기사항에 처한 주민
- 신청처 :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및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등
- 지원기간 : 생계지원 최대 6회(단, 주거는 12회)



#### 구비서류

-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입원확인서(해당자) 등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사후조사 결과 부적합하면, 지원종료 및 환수 안내)
  - 단기 지원 원칙
  - \* (생계)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3개월 지원 가능하며, 위기사항이 계속 될 경우
  -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3개월 연장 지원 가능
  -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평생 한번). 그러나 세부 위기사항을 달리 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음
  - 타법률 우선 원칙(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은 아님. 단,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수술을 하거나, 중환자실 이용 등의 긴급한 사유) 인정
- 지원비용의 환수
  - 판정 및 환수결정기관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환수 금액
  - \* 원칙 : 반드시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전부 환수하여야 함
  - \* 예외 : 비용을 반환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일부만 반환하게 할 수 있음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4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p.101 각주 87번
-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월 생활준비금 공제 등
- 2014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p.87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생계지원 (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기타지원 (150%)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3,803,888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
  - 긴급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개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가구특성별 지출을 차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2014년 긴급지원사업안내 p.64 각주 60번
  - 2014년 긴급지원사업안내 p.70 각주 67번(추정소득 미부과)
- 일반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 지원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인 399,900원 4인 1,080,800원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원	594,200원 (4인 기준)	12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지원	- 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339,400원 (4인 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학비	• 초 204,700원 • 중 325,900원 • 고 399,3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2회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10월~3월) 88,800원 -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 \* 긴급지원은 주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지며, 주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부가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부가급여 단독으로는 지원 불가)
- \* 긴급지원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적 급여와 성격이 다름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면
  - 긴급지원은 종료
  - 매월 정액으로 받던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됨
  - 긴급지원 생계비는 정액 지급으로 기초 생계비가 간혹 더 적을 경우 민원 제기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필수!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을 요청한 경우
  -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우선 신청
  - 수급 탈락자에 대해 긴급지원 검토
  - 출소자가 당장 생활비가 없다고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신청 후 시·군·구 기초생활급여 담당자에게 긴급 생계급여를 선지원 요청할 수 있으니 안내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186 참고

- 긴급지원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는 수당 확인
  - 한부모가족인 경우 양육수당 : 한부모가족 사업부서 담당자와 확인하여 긴급생계지원 기간동안 양육수당 중지 요청
  -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사업 : 긴급지원 해산비 중복지원 불가에 따라 대상자에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신청토록 안내
  
- 긴급지원 사업초기 가장 많은 부분은 의료지원
  - 우선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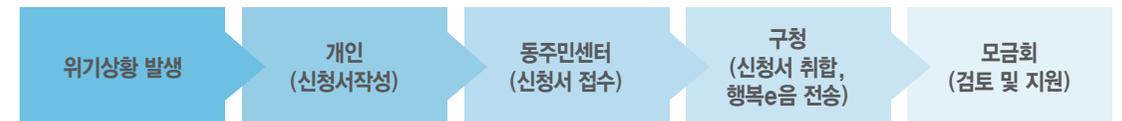
- 보건소 : 희귀난치성 및 암환자지원 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

**6-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복지부-긴급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업무 흐름도**



- 신청대상 :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사항으로 당장 어려움에 처한 대상
- 신청장소 : 읍·면·동



**구비서류**

- 생계비 : 긴급지원추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계비 지원 관련 증빙서류 (각종 체납확인서, 실직 증명서, 소액의료비 영수증 등)
- 의료비 : 긴급지원추천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 재해·재난비 : 긴급지원추천서, 재해피해 확인서(화재증명원 등)
  - \* 공동모금회 신청자료 송부 시 반드시 행복e음 서비스 연계하여 전송 단, 전산사정상 부득이하게 행복e음 연계 불가시 수기문서로 세대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신청가능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은 민간지원 사업이며, 복지부 긴급지원을 먼저 검토한 후 기준 부적합자의 경우 추천이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초기 상담시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선별 가능
- 복지부 긴급지원은 위기사항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지만,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은 위기사항이라 명확히 정의해 놓지 않았기에, 추천 공무원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하는 것이 중요
- 지원방법 및 원칙
  - 지원방법
    - \*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함.
    - \* 의료비는 병원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부담금의 70% 까지만 지원 가능
    - \* 주거비의 경우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지원원칙
    - \* 동일세대에 대해 1회계 연도 내 1회에 한해 지원
    - \* 당해 연도 대상자가 복지부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 복지부 긴급지원 생계비를 받은 대상자가 공동모금회 생계비 및 의료지원 등의 다른 지원도 불가
    - \* 시설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 200%이내	1,206,806	2,054,834	2,658,236	3,261,640	3,865,044	4,468,446	5,071,850

**【재산기준】**

(단위 :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고
기준액	13,500	8,500	7,250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항목	급여대상	지원내용	관련지침
지원대상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200% 이내), 외국인	수급자,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200% 이내), 외국인	수급자,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200% 이내), 외국인
지원한도	1,000천원	3,000천원	개인 : 1,000천원 시설 : 2,000천원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 350 천원</li> <li>- 2인 가구 : 600 천원</li> <li>- 3인 가구 : 800 천원</li> <li>- 4인 이상 : 1,000 천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액내 본인부담액의 7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소(파) : 50만원</li> <li>* 반소(파) : 70만원</li> <li>* 전소(파) : 100만원</li> </ul> </li> <li>■ 시설 : 2,000천원</li> </ul>
지원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계비 : 급식비, 단전·단수, 가스 연체료, 건강보험체납료 (공단감액분제외), 실직(근로활동이 없는 상태), 소액의료비(외래), 주민등록말소자 및 무연고자의 장제비,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생계비</li> <li>② 주거비 : 월 (연)임대료,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용,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주거비</li> <li>③ 교육비 : 등록금, 교복, 교과서 구입비 등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교육비</li> </ol> <p>*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분에 한하여 증빙서류 인정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갑작스런 질병, 부상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li> <li>② 입원 중에 요청되는 검사비, 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장애인보장구는 지자체,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 지원기관 중복지원 제외)</li> <li>* 의료비 청구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업체를 통해 적격증빙을 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li> <li>③ 만성질환 악화에 따른 긴급사안 발생으로 치료 중인 의료비</li> <li>④ 추가진료를 위해 타 병원으로 전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술 및 치료비 한도액 내 지원 가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난재해로 인한 생계비 (화재복구비, 급식비, 주거비)</li> <li>② 재난재해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수리비</li> <li>* 단, 일반 배분사업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리 (행복e음으로 신청불가)</li> </ol>
지원제외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급자(조건부포함) 생계비 지원 제외</li> <li>② 단일항목에 대한 단순채납 및 일반적인 생계비 지원은 제외</li> <li>③ 대학생 등록금 제외</li> <li>④ 부채상환 목적의 생계비 불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만성질환, 장기입원자, 요양성질환 제외 (만성질환예시 :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고지혈증, 만성콩팥병,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비염, 만성폐질환, 관절염, 팔다공증, 수면무호흡증, 난청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li> <li>②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치료 제외</li> <li>③ 간병비, 약값 제외</li> <li>④ 성형목적의 진료비, 치과진료비, 한방첩약 제증명료 제외</li> <li>⑤ 상급병실료 제외 (단, 병실부족이나 전염성 질환 등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원소견서 또는 상급병실사용 확인서 첨부 시 지원 가능)</li> <li>⑥ 구(동)신청일 이전에 기납부된 의료비는 지원 제외</li> <li>⑦ 퇴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 의료비는 지원 제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화재 및 재해재난 발생일자 구(동)청 신청일 기준 1개월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li> <li>② 주민등록등본과 화재 발생 주소지가 불일치하거나 실 거주주택이 아닌 부속건물은 지원 제외</li> <li>③ 소유주택 없이 점포/상가내에서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함(점포/상가의 경우화재보험가입여부 지원 검토)</li> </ol>

2014

##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 II. 주요 복지사업

### 7. 서비스연계

- ❖ 통합사례관리
- ❖ 이웃돕기사업
- ❖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 ❖ 저소득층 자금융자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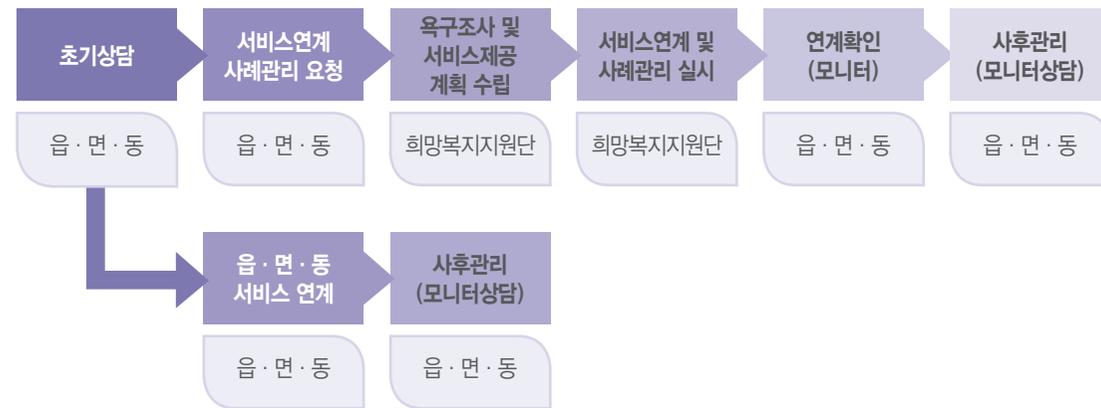
### 7. 서비스 연계

#### 7-1. 통합사례관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을 연결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활동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



- 대 상 : 서비스연계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전락을 방지 할 수 있는 저소득 가구 등

→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안내 p.86참고

- 사례관리 의뢰방법 : 읍·면·동 → 희망복지지원단 의뢰
  - 대상자 본인이 읍·면·동, 129콜센터 전화 및 방문신청
  - 지역사회(교사, 경찰, 통장, 종교기관, 이웃주민 등)의 의뢰
  -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의뢰 가능



#### 구비서류

- 통합사례관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초기상담이 중요
  - 초기 상담시 통합사례관리 또는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복e음 초기상담을 통해 복합적인 가구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

\***사례관리 가구** : 1개월 이상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 일련의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

\***서비스연계 가구** : 욕구가 단편적이라서 1개월 미만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한 가구

-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 총괄 수행 관리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 가구 및 서비스 연계 가구 구분하여 제공계획 수립
- 읍·면·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 가구 초기 상담, 의뢰 및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
  - 복지담당 공무원은 초기 상담 또는 정기·비정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의뢰
- 읍·면·동 자체 서비스연계가 가능한 경우
  - 읍·면·동 자체 자원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자체 지원하되, 지원내역을 행복e음에 등록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보고

참고] 사례관리의 개념

- 사례관리란 ①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 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④ 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 유사 개념과 비교

항목	급여대상	지원내용	관련지침
이용자	욕구	• 비교적 단순한 욕구	• 다양한 욕구
	능력	•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상	• 자신의 욕구를 완전하게 알지 못하거나 관련 복지지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상
제공기관	기관	• 읍·면·동에서 신청 → 시·군·구에서 지원확정	• 읍·면·동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인력	• 읍·면·동 담당자	• 읍·면·동 담당자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담당자
	기간	• 단기	• 비교적 단기
지원내용	목표	• 신청(요구) 하는 문제의 해결	•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욕구까지 해결
	지원수	• 신청한 서비스	• 다수의 서비스
	성격	• 공공 서비스(급여) 지원	•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지원 * 지속적인 상담·관리 병행
장단점	장점	• (장점) 효율성이 높으며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본인의 협조를 얻기 쉬움	• (장점) 다양한 욕구에 대한 대응가능
	단점	• (단점)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에게는 부적합, 사각지대 문제	• (단점) 문제해결 상태의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위급 시 필요한 진단 비 지원
  - 장애인단을 위한 진료비
  - 심리진단 및 심리치료비
  - 정신과 진료비 및 진단관련 검사 비
- 생활지원비
  -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지원
  -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지원
- 자활(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비 보조 지원
  - 이·미용, 피부미용
  - 조리(한식, 양식, 일식 등), 제과제빵
  - 자격취득(전자정보처리, 요양보호사 자격 등)

1가구당 최대 지원액 : 50만원(의료비+생활지원비 등)  
- 1가구당 생활지원비는 최고 30만원까지, 진단비 및 교육비 등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가능

→ 2014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p.97참고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사례관리 종결 후 6개월 단위로 1회씩 2번 모니터 상담 실시
- 개인정보 보호 철저
  - 대상자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 사례관리를 통해 주요 목적이 달성 되거나, 정보 보유기간(5년)이 지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7-2. 이웃돕기 사업

이웃돕기사업은 읍·면·동에 접수된 현금·현물 기탁에 대한 처리 절차로 초기 상담 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업무 흐름도



- 지원종류 : 현물지원, 현금지원, 기타
- 구비서류 : 배분 대상자의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유효기간 5년)
- 기탁자 ↔ 읍·면·동 ↔ 시·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부자 성금기탁서 작성
  - 행복e음 등록 : 서비스 정보관리 → 지정기탁(현금/현물) > 서비스상세정보 등록
  - 시·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계좌 입금 / 현물의 품목, 수량 등록
  - 배분대상자 선정
  - 행복e음 등록
    - (지정기탁-현금) 서비스 제공관리 → 후보자 조회 → 서비스 신청정보 신청 → 대상자 전송대기 → 모금회 전송(공문과 기탁서, 배분대상자는 첨부파일로 전송)
    - (지정기탁-현물) 지정기탁 현물 배분관리 → 기탁목록 확인 → 대상자 추가 → 서비스 완료
- \* 성금기탁서 및 배분대상자 공문 FAX 전송(수신 : 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탁자 ↔ 시·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탁자가 직접 시·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화하여 후원대상자를 지정 혹은 일반으로 선택하여 성금 입금
  - 지원 분류 : 지정기탁 일시, 지정기탁 정기, 일반기탁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기탁자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도 접수 가능
- 기탁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원할 경우
  - 현물기탁신청서 인적사항 포함 작성
  -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택 1
- 후원물품 배분계획시 배분대상자를 사전에 정하여 리스트를 작성,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알아두면 좋아요.**

- 기탁 현물 배부(가급적 즉시)
  - 배부시, 기탁현물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 배분스티커 부착
    - \* 배분스티커가 없을 경우 사랑의 열매 고무인으로 표시
  - 배분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징구
    - \* 배분대상자 명단을 시·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3자)에 송부하여야 하므로 동의서 징구 필요

### 7-3.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최저소득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소득 기준 제한)
- 신청처 : 읍·면·동 및 LH공사 등
- 신청기간 : 시·군·구별 공고일이 다름에 따라 확인 필요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확인서류, 청약저축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 사전숙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주거지원 서비스는 연중 신청하는 사업이 아닌 시·군·구별 신청일이 다름에 따라 유의
  - LH공사 및 도시공사 공고 확인
- 시·군·구별 주거 배정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이 다름
- 통상 2년 거주 후 재계약 체결되며, 재계약 시 기준 변경될 수 있음

####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비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2,303,100원	2,551,400원	2,678,720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606,216원	5,102,802원	5,357,446원	

####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 ■ 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	■ 기초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주택 세대주 *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해당 시·군·구별 입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절차	읍·면·동 신청 → 시·군·구 담당자 취합 → LH 공사 및 도시공사에 통보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입주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 ■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 ▶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입주대상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등록 장애인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쟁 시 부양 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여부, 자활사업 참여기간 등에 따른 배점
신청절차	■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고 대상자 → 읍·면·동 신청 → 시·군·구청장(자격심사 및 대상자 선정, 순위결정) → LH공사(우선순위에 따른 임대주택 안내, 계약체결)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 사업비의 5% · 월임대료 : 시중전세시세의 30% 수준 * 서울지역 50㎡의 경우 : 보증금 424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구비서류	불필요(자침 개정에 따라 행복e음을 통한 자산조사 실시)

- 기존주택 전세임대
  - ▶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
  - ▶ 신청인과 LH공사, 집주인이 삼자 계약하는 제도로 신청인 맘에 드는 기존주택을 구한 후 LH 공사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제도

<b>입주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li> <li>-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li> <li>- 2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li> <li>· 등록 장애인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li> </ul> </li> <li>* 동일순위 경쟁 시 부양 가족수, 청약저축 가입여부, 자활사업 참여기간 등에 따른 배점</li> </ul>
<b>신청절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li> <li>대상자 → 읍·면·동 신청 → 시·군·구청장(자격심사 및 대상자 선정, 순위결정) → LH공사(우선순위에 따른 임대주택 안내, 계약체결)</li> </ul>
<b>임대조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세의 30% 수준</li> <li>· 임대보증금 : 사업비의 5%</li> <li>· 월임대료 : 시중전세시세의 30% 수준</li> <li>* 서울지역 50㎡의 경우 : 보증금 424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li> </ul>
<b>임대기간</b>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b>구비서류</b>	불필요(지침 개정에 따라 행복e음'을 통한 자산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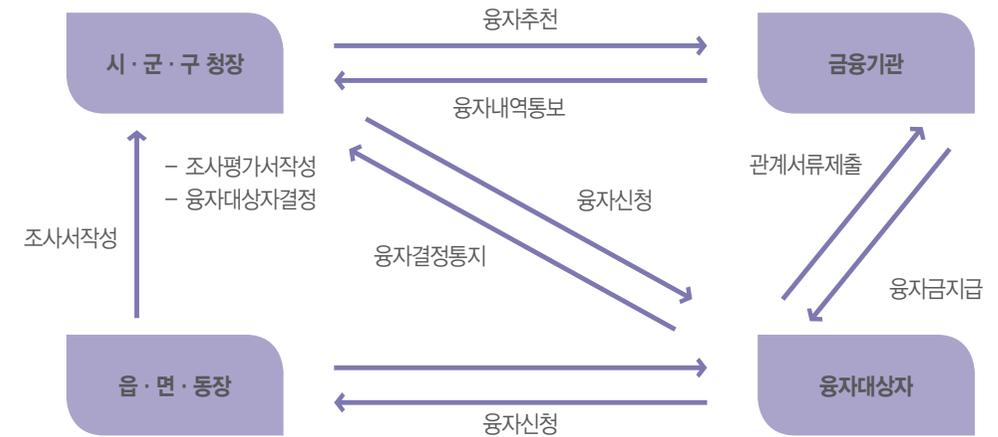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긴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접수 시기와 상관없이 긴급주거지원 요청 가능
- 입주희망지역은 제한 없음(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7-4. 저소득층 자금용자지원사업**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받아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 읍·면·동
- 신청대상 : 용자 사업별 해당자



**구비서류**

-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확인서 등

**☑ 사전숙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주거지원 서비스는 연중 신청하는 사업이 아닌 시·군·구별 신청일이 다름에 따라 유의
  - LH공사 및 도시공사 공고 확인
- 시·군·구별 주거 배정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이 다름
- 통상 2년 거주 후 재계약 체결되며, 재 계약 시 기준 변경 될 수 있음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상담 신청 시 용자대상 및 용자조건을 미리 안내하여 부적격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금융기관의 용자심사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
- 용자대상자 창업 역량 배양을 위해 적격자로 결정되는 자에 한해 2주 이내 소상공인진흥원 e러닝 교육을 15시간 이수하여야 함(mw.sosang.or.kr)
- 읍·면·동에서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 [자활서식 25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구분	저소득층 생업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대상자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 유사목적의 자금 대어를 받은 경우 제한됨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용자불가	등록 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300% 이하의 저소득층 * 생업자금, 생업을 위한 자동차구입비, 취업위한 기술훈련비, 자기개발훈련비, 의료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
용자조건	• 한도액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내 5,000만원 이하 *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 이 율 : 고정금리 연 3.0% • 용자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 한도액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 이 율 : 고정금리 연 3.0% • 용자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관련지침	→ 2014년 자활사업지침 p.159	→ 2014년 장애인지침1권 p.221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복지자금대여사업은 2014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용자로 통합운영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전출입 관리
  - 대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신거주지 시·군·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를 즉시 송부하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 읍·면·동에서는 대어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추진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 대어 받은 날로부터 6월 경과 후부터 매 반기별로 점검



2014

##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 II. 주요 복지사업

### 8. 기타 복지 사업

- ❖ 바우처
- ❖ 초·중·고 교육비지원



### 8. 기타 복지 사업

#### 8-1. 바우처

-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공공행정,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전자카드(전자바우처)형태로 지원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



- \* 신청처리기한 : 매월20일까지 접수분 21일 등급판정 및 행복이음 전송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읍·면·동, 인터넷(아동인지능력향상)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 **사전속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서비스 지원 신청자(별도기준 적용가능)  
→ 2014년 지역자율 형 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81
- 선정기준
  - 일반(육구)기준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인터넷 중독 고위험 등 해당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 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원칙 적용하되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
  -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
  - 선정우선순위 : 사업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는 지역의 수요 및 예산상황을 감안 지자체의 장이 정함
- 조사내용 :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조사함
- 지역개발 형 사회서비스 종류<sup>22)</sup>

22) 읍·면·동에서 많이 신청하는 서비스 종류를 기술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참조하세요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구분	내용												
① 목적	• 영유아 발달 초기에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도모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2008.1.1~2012.12.31 생 아동 - 1등급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치료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용자 포함), 장애아동(장애아동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가 예견된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장애 유형 명시), 기타 장애아동 재활치료 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 등),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아동, 조손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2등급 : 1등급 외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제공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정교사,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독서지도사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① 1등급 아동 : 1인당 월 25천원, ② 2등급 아동 : 1인당 월 15천원 *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별, 서비스 상품별 차등 적용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외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 1등급의 경우 재신청 판정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이용자 가구에 제공인력을 주1회 이상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본 서비스</td> <td>1. 책 읽어주기 - 프로그램에 따라 책을 읽어 주되 시간 범위 내에서 가급적 전체내용을 읽어 줌 (책을 읽어주는 대신 목록체크 등으로 서비스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td> <td>주1회 월 4회 이상 (회당 20분 이상)</td> </tr> <tr> <td>2. 독후활동 - 아동 대상 독서 후 느낀 점 이야기하기, 책읽는 방법 지도 등</td> <td></td> </tr> <tr> <td>3. 도서지급 * 고가의 책인 경우 대여 서비스도 가능</td> <td>월 4권 이상 도서지급</td> </tr> <tr> <td>4. 부모 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 - 양서나 독서지도 관련 정보제공,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 관계법 지도</td> <td>월 1회 이상</td> </tr> </tbody> </table> 2) 서비스 제공 절차 • 1단계 : 부모 상담, 이용자 독서 능력 및 욕구조사(아동의 인지능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사전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사후 검사 의무 실시)	구분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책 읽어주기 - 프로그램에 따라 책을 읽어 주되 시간 범위 내에서 가급적 전체내용을 읽어 줌 (책을 읽어주는 대신 목록체크 등으로 서비스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	주1회 월 4회 이상 (회당 20분 이상)	2. 독후활동 - 아동 대상 독서 후 느낀 점 이야기하기, 책읽는 방법 지도 등		3. 도서지급 * 고가의 책인 경우 대여 서비스도 가능	월 4권 이상 도서지급	4. 부모 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 - 양서나 독서지도 관련 정보제공,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 관계법 지도	월 1회 이상
구분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책 읽어주기 - 프로그램에 따라 책을 읽어 주되 시간 범위 내에서 가급적 전체내용을 읽어 줌 (책을 읽어주는 대신 목록체크 등으로 서비스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	주1회 월 4회 이상 (회당 20분 이상)											
	2. 독후활동 - 아동 대상 독서 후 느낀 점 이야기하기, 책읽는 방법 지도 등												
	3. 도서지급 * 고가의 책인 경우 대여 서비스도 가능	월 4권 이상 도서지급											
	4. 부모 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 - 양서나 독서지도 관련 정보제공,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 관계법 지도	월 1회 이상											
⑥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1:1)												

2.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구분	내용										
① 목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③ 제공기관 및 제공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사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월 4회 제공) 월 136천원 (정부 122천원, 본인 14천원) / 10개월 • (월 2회 제공) 월 68천원(정부 60천원, 본인 8천원)/ 10개월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재판정 1회(최대 2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월 4회(회당 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노인</td> <td>• 전신안마 • 발마사지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자극요법</td> <td rowspan="3">주 1회 (회당 1시간)</td> </tr> <tr> <td>장애인</td> <td>•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지압 • 자극요법</td> </tr> <tr> <td>기타 질환자 (특화사업)</td> <td>•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td> </tr> </tbody> </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 조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기관방문형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서비스형)도 인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노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자극요법	주 1회 (회당 1시간)	장애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지압 • 자극요법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노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자극요법	주 1회 (회당 1시간)									
장애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지압 • 자극요법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										
⑥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 하고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⑦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1:1)										

3. 아동돌봄서비스

구분	내용
① 목적	• 가정의 기초돌봄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건강, 학습, 정서 등의 일상생활관리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 및 아동 정상적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만 5~15세 이하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아동돌봄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이하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이하 "유치원정교사"), 사회복지사, - 독서지도사, "자격기본법" 제17에 의한 방과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 상담학, 상담심리학,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아동관련 사회서비스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월 24만원 내외 (정부 20만원, 본인 4만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초돌봄 서비스로 소년소녀가장, 맞벌이,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 아이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식사 챙기기 등 기초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토요일에 출근하여 아동을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대신하여 놀토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가정내 돌봄 및 외출 동행 * 유형A : 라이프 코칭 + 기초돌봄 ** 유형B : 라이프 코칭 + 놀토서비스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된 가구의 소득 및 욕구조사(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조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4. 문화누리사업

구분	내용								
① 목적	• 생계 및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생활을 향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화생활을 향수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함								
② 서비스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만6세 이상								
③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연간 10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한 가구당 1매 발급됨. • 가정에 만 6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이 있다면, 청소년 개인당 연간 5만원 이용권을 개인당 1매씩 더 발급 해드립니다. • 세대 내에 최대 5명까지 발급되며 합산 금액을 하나의 카드에 통합해서 사용가능 / 12개월								
④ 사용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문화</td> <td>•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온라인 문화콘텐츠(음원, e-book, 영화 다운로드), 아트상품, 문화예술강좌 등</td> </tr> <tr> <td>여행</td> <td>•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 국내선 항공권, 철도 탑승권(협의 중), 여객선 승선권, 고속버스 승차권, 여행기간 중 차량 임차비 • 숙박업으로 가맹된 숙박업소(호텔, 모텔, 펜션 등) • 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휴양림 및 스키장 입장권 • 지역 축제 및 관광 명소*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이용가능* 캠핑장은 별도의 가맹업종 구분 없음, 인터파크 티켓에 캠핑장, 스키장, 워터파크, 인터파크 투어 등 이용 가능</td> </tr> <tr> <td>스포츠 관람</td> <td>•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국제스포츠, 경기대회(국내대회)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 태권도 학원 등 스포츠 강좌는 이용 불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참조)</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문화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온라인 문화콘텐츠(음원, e-book, 영화 다운로드), 아트상품, 문화예술강좌 등	여행	•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 국내선 항공권, 철도 탑승권(협의 중), 여객선 승선권, 고속버스 승차권, 여행기간 중 차량 임차비 • 숙박업으로 가맹된 숙박업소(호텔, 모텔, 펜션 등) • 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휴양림 및 스키장 입장권 • 지역 축제 및 관광 명소*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이용가능* 캠핑장은 별도의 가맹업종 구분 없음, 인터파크 티켓에 캠핑장, 스키장, 워터파크, 인터파크 투어 등 이용 가능	스포츠 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국제스포츠, 경기대회(국내대회)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 태권도 학원 등 스포츠 강좌는 이용 불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참조)
	구분	내용							
	문화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온라인 문화콘텐츠(음원, e-book, 영화 다운로드), 아트상품, 문화예술강좌 등							
여행	•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 국내선 항공권, 철도 탑승권(협의 중), 여객선 승선권, 고속버스 승차권, 여행기간 중 차량 임차비 • 숙박업으로 가맹된 숙박업소(호텔, 모텔, 펜션 등) • 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휴양림 및 스키장 입장권 • 지역 축제 및 관광 명소*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이용가능* 캠핑장은 별도의 가맹업종 구분 없음, 인터파크 티켓에 캠핑장, 스키장, 워터파크, 인터파크 투어 등 이용 가능								
스포츠 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국제스포츠, 경기대회(국내대회)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 태권도 학원 등 스포츠 강좌는 이용 불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참조)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사업

구분	내용
①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②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은 신청대상이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등은 신청불가
③ 서비스 제공기간	• 지원기간 :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 등급 2급 이상) 산모 4주(24일) 지원 • 이용시간 - 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④ 제출서류	• 신청서 1부(공통서식 제 1, 2호)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행정정보공동 업무 시스템(www.share.go.kr)에서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임 • 가구원(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부과액 기준)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 명세서 첨부 - 가구원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 매월 지급받은 연금명세서 첨부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 신청월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신부는 제출 생략 -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구분	내용
①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
② 서비스 대상	• 65세 미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③ 제외대상	• 연간 10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한 가구당 1매 발급됨 • 가정에 만 6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이 있다면, 청소년 개인당 연간 5만원 이용권을 개인당 1매씩 더 발급 해드립니다 • 세대 내에 최대 5명까지 발급되며 합산 금액을 하나의 카드에 통합해서 사용가능 / 12개월
④ 사용처	• 월 24 또는 27시간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⑤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1부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바우처 카드 및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업무 Tip

알아두면 좋아요.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자체 예산안에서 3가지를 선택하여 시행
-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사업종료
-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은 지정계좌로 선납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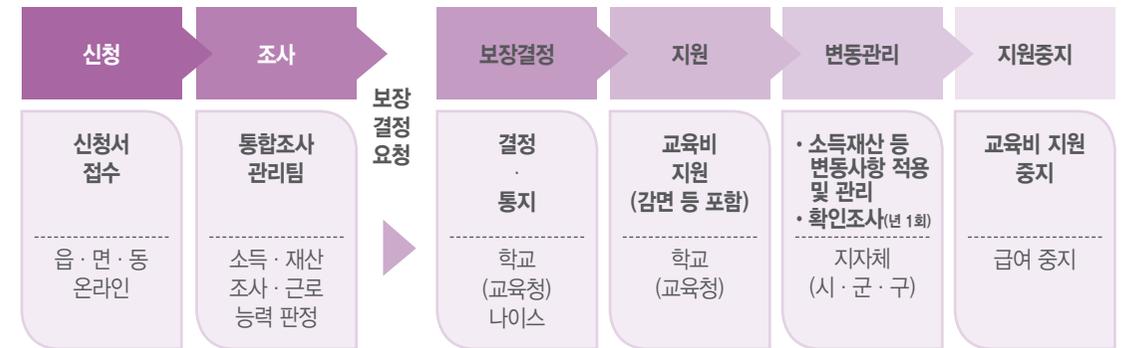
### 8-2. 초·중고 교육비지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4대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 4대교육비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통신비)

☑ **업무수행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업무 흐름도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구비서류

필수구비서류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관련지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 (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 무료임대확인서 등	'14 초·중·고 학생 교육 지원 사업안내 p.6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구비서류 제출 불요

☑ 사전숙지사항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요!

■ 신규신청자 vs 기존·변동 신청자에 따라 다름

구분	저소득층 생업자금	관련지침	비고
신규신청자	신규 신청자는 • 관할 읍·면·동(부모나 학생의 주소지) •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신청 가능 • 초중고교육비 접수 후 부적합에 대한 이의신청할 경우 이의 신청에 접수하여 통합조사팀으로 이관	'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p.6-7	읍·면·동
기존수급자 변동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통보	'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p.9	통합조사 관리팀

☑ 선정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저소득층 자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수급자</li> <li>-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li> <li>- 법정 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li> </ul> </li> </ul>																				
소득·재산기준 ☞ p.3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는 기준 (통상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며, 시·도 교육청별·교육비별 상이)</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최저생계비 100% 이하</td> <td>133</td> <td>164</td> <td>194</td> <td>224</td> </tr> <tr> <td>최저생계비 130% 이하</td> <td>173</td> <td>213</td> <td>252</td> <td>291</td> </tr> <tr> <td>최저생계비 150% 이하</td> <td>200</td> <td>245</td> <td>290</td> <td>33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li> <li>-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li> </ul> </li> <li>•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li> <li>•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li> <li>•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자동차(월 100%/3)</li> </ul>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100% 이하	133	164	194	224	최저생계비 130% 이하	173	213	252	291	최저생계비 150% 이하	200	245	290	336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100% 이하	133	164	194	224																	
최저생계비 130% 이하	173	213	252	291																	
최저생계비 150% 이하	200	245	290	336																	

☑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구분	지원내용
고교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급식비	학기 중 평일 중식비
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
교육 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유해차단 서비스 지원여부는 시·도교육청별 상이

\* 그 외 지자체별 지원 내역 상이하오니, 지자체마다 실시하고 있는 혜택 파악하여 숙지 필요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미 지원, 신청주의)
- 분교장에 재학 중인 경우, 분교장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 중복지원 제한 - 타 법률에 의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이므로 함께 신청할 수 없음
- 선정된 경우, 해당 학년도 시작일부터 학년도 말('15년 2월)까지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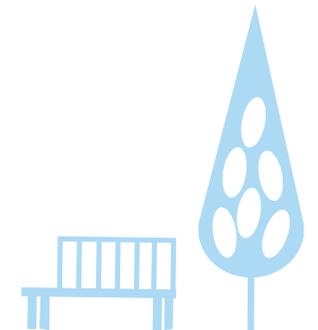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정함

- 읍·면·동에서 하는 초중고교육비 업무
  - 교육비 신청서 검증·접수(온라인 신청 포함)
  - 교육비 지원신청 절차 상담
  - 소득·재산 조회 관련 민원 상담
  - 초중고교육비 이의 신청과 관련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는 읍·면·동에서 접수 받음

I. 복지업무 한 눈에 보기  
1. 저소득층  
2. 차상위  
3. 아동·청소년  
4. 장애인  
5. 노인  
6. 긴급지원  
7. 서비스연계  
8. 타부처 사업 등  
III. FAQ  
IV. 관련용어

##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한 복지관련 제 증명

구분		
수급자 증명서	발급일 현재 복지급여 대상자임을 나타내주는 서류이며 전국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함.	행복e음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연금, 장애수당(아동)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확인서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서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 발급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적합, 부적합)·변경(중지·정지·상실)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련 업무 신청시 결정(변경포함) 통지서이며, 복지대상자가 속한 읍·면·동에서만 발급가능함</li> <li>- 보장구분 : 해당 보장내역을 보여줌</li> <li>- 보장급여 : 해당 보장서비스(급여)를 보여줌</li> <li>- 급여개시일 : 책정일이 기재되어 있음</li> </ul>	



### III. FAQ (선배들의 조언)



2014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 III FAQ(선배들의 조언)

#### 1 민원인에 대한 호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 호칭은 상대방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선택해야 함
- 일반적으로 선생님 또는 ○○○님, 노인의 경우 어르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친근하게 아바님, 어머니도 가능 함
-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진심을 담아 친절한 목소리와 밝은 표정으로 응대하는 자세임

#### 2 미처 모르는 것을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 민원인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경력이나 준비정도를 고려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 함
- 미처 모르는 것을 질문 받을 경우 우선 민원인에게 자신이 담당자가 아님을 밝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함
-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이 먼저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또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서 정확하게 안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찮으시다면 다른 동이나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많이 바쁘시면 제가 알아보고 바로 전화나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관찮겠습니까?”

- 텍스트보다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 기억에도 오래 남고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 보다 예의를 갖춰 양해를 구하고 친절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 공무원이 되는 지름길이라 할 것임

#### 3 살기 힘들다고 찾아오는 분이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자신감도 없고 당황스러워요.

- 생활이 어려워서 찾아오는 경우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적자료가 있는지를 확인
- 먼저 신분증을 확인하고 잠시 전산자료 확인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행복e음」에서 복지대상자/복지

대상자 원스크린 조회를 통해 대충 1분 이내 사전 정보 확인

- 현재 어떤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가?
- 소득 및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
- 최근 상담한 내용은 무엇인가?

- 민원인이 자신의 방문목적을 분명히 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확인할 사항을 질문하고 구비서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안내
-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행복e음」에 등록된 구비서류 확인  
ex) 유효기간이 1년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드는데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발급 할 필요가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3급 장애인이 가사간병바우처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진단서가 필요 없음
- 「행복e음」 복지대상자 원 스크린 조회 결과 참고할 만한 정보가 없는 경우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1촌 부양의무자 확인
- 「행복e음」 초기상담 화면으로 와서 가구원 조회를 해보고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기
  -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 부양의무자와는 자주 연락하시나요?
  - 부양의무자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 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도움은 있나요?
  - 본인의 건강상태는 어떠세요?
  - 많이 힘드셨는데 그 동안 어떤 방법으로 생활비를 해결하셨어요?
- 질문할 때 심문받는다느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호감을 줄 수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비밀보장을 위해 낮은 목소리 유지
- 시간을 절약한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e음」초기상담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것은 금물
- 경청과 기록을 통해 상대방이 존중받는다느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체크
- 상담이 어느정도 완료되면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읍·면·동은 초기상담과 복지급여 신청을 접수받는 곳이며 시·군·구에서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하고 방문조사한 후 결정하는 것이라고 안내
- 구비서류를 제출한 날이 신청일이 되며 처리기한은 14일이지만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양 의무자에 대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부연 설명으로 마무리

**4** 산적하는 공문도 처리하기 바쁜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려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 2014년 5월 14일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는「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관리방안」 보고에서 과거 기준 17개 부처(청) 292개 사업을 220개로 재분류하고 조사된 140개를 추가하여, 21개 부처(청) 360개 사회보장사업 관리 범위로 확정 함
- 360개 사회보장사업 중 상당수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야 하고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각종 요금할인, 공동모금 회 배분사업, 민간재단 후원사업 등 수시로 이와 관련한 공문이 시달 됨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한 제언
  1. 매주 1회/ 2가구이상 방문상담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기  
가정방문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위탁아동 등 난이도와 지역 동선을 충분히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방문 갈 때 여건이 된다면 두 명이 같이 가도록 하며 복장은 편한 바지를 입는 것이 좋고 출입문을 살짝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 함
  2. 방문상담에서 복지욕구 및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서비스 연계까지 있다는 목적의식 갖기  
관계(가족, 이웃, 종교, 비상연락처), 건강상태, 이용하는 서비스, 각종 감면제도 신청 현황, 주거환경, 교육 및 여가욕구, 바우처사업 등 각종 서비스를 일괄로 홍보하고 체크하여 누락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임  
\* 별 첨(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카드) 참고
  3. 「행복e음」상담·신청 / 모니터상담관리에 다녀온 내용을 꼭 입력하기  
의사가 진료기록을 남기듯이 복지공무원도 상담기록이 필수이며 「행복e음」을 통해 성과관리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음
  4. 방문상담을 갈 때 각종 신청서 모뎀 바인더를 준비하면 One-Stop 맞춤형서비스도 가능 함
  5. 평소 보고일자, 중요도를 고려하여 공문처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6. 복잡하고 어려운 공문을 받으면 그 업무를 제일 잘하는 key person을 찾아 문의하기

**5** 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기초수급자 개인정보를 요구 하는데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 경찰관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항의 7을 명시한 공문을 제시할 경우 문서를 등록하고 제공할 수 있음
- 비밀수사 중이라든가 정보수집 단계라며 친분 또는 유관기관 협조 차원으로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제공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친절하게 공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종교기관 또는 봉사단체 등에서 이웃돕기를 하겠다고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취지는 좋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공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읍·면·동으로 후원물품을 지정 기탁하도록 권유하여 공동모금 회를 통해 투명하게 배분 처리하는 것이 좋음
- 종교기관 또는 봉사단체 등에서 직접 해야겠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문제로 거절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본인들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정보주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번거롭지만 건너 뛸 수 없는 절차이고 동의한 사람의 최소한 정보(주민등록번호 노출 절대금지)로 명단을 작성하여 공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해야 된다고 꼭 명시해야 함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따라 시·군·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기 위해 담당부서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공문으로 송부해야 함
- 마무리 단계로 자원연계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행복e음,자원관리 / 자원서비스관리에서 자원등록을 하고 사례관리 / 지역서비스 제공관리에서 연계신청 및 서비스 완료를 입력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취약한 분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에 유의하고 평소「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조항을 찾아가면서 업무하는 습관이 필요 함

**6** 소방관 또는 경찰관이 기초수급자 문제로 당장 현장에 나와 달라고 하면 우리도 긴급 출동해야 하나요?

- 경찰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에는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때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평소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참고로 정신보건법 제26조(응급입원)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경찰관이 72시간 동안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어 수급자 보호 관리 중 경찰관과의 공조가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함

**7** 민원인이 욕설을 퍼붓고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어서 너무 무서워요.

-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담당 공무원의 안전으로 우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온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최소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함
- 다른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언어폭력이 심할 경우엔 빨리 112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함
- 고질 민원이라면 사무실 상사들이 대신 응대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여 상대방의 관심을 분산 시켜야 함
- 간혹 스토커처럼 힘들게 하는 민원인 또는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업무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다가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내 탓으로 생각된다면 우울증 초기 증세라고 여기고 옆에 있는 동료나 선배들에게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병은 소문내라”는 속담처럼 힘들 때는 꼭 표현을 하는 것이 좋고 주변 동료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계속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해결을 위해 상사나 시·군·구에 지정되어 있는 고충상담관(주로 인사팀장)에게 고충상담을 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
- 민원응대는 처음부터 잘 하기는 어렵고 연습이 필요하므로 시·군·구마다 마련된 민원응대 매뉴얼이 있으니 찾아서 참고하고 한 가지씩 실천해보는 것이 바람직 함

**8** 간단한 계획서와 보도자료를 작성해보라고 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막막해요.

- 대부분의 계획서는 제목, 박스 처리된 목적, 개요, 세부추진계획, 홍보방법, 기대효과, 행정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문서등록대장에서 잘 만들어진 문서들을 찾아 참고하면 도움이 되고 평소에 공람문서를 볼 때도 좋은 계획서나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문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저장해서 멋진 서식이나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음
- 또한 그 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다운받아 읽어보면 올해 중요한 정책 트렌드 뿐만 아니라 유행하는 글씨체와 문서형식 등도 알아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며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계획, 실행, 중간보고(평가), 결과보고(최종평가)라는 업무형식의 완결성을 갖추고 최소한 계획단계와 마무리단계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보도 자료는 행정홍보에 가장 효과적이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제적인 수단으로 읍·면·동장님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보도자료 작성 요령을 익혀두면 편리 함
- 보도자료 작성 요령
  1. 보도자료를 쓰기 전 유사한 기사를 참고하고 6하 원칙에 의거, A4용지 1장 정도로 핵심을 요약 한다.
  2.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읽기도 쉽게 한 문단은 3~4줄 정도가 적당하고 한 문장엔 한 주제만 쓴다.
  3. 역삼각형 형식(중요한 사항을 글의 앞에 배치하는 것)의 기사체로 쓰되, 가급적 전문용어를 피하고 쉽게 쓴다.
  4. 독자에게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주는지 알려준다.
  5. 이슈, 트렌드, 타이밍에 제목과 리드(첫 문장)를 강하게 뽑는다.
  6.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위주로 쓰고 불필요한 형용사, 부사, 미사여구 등은 배제한다.
  7. 비주얼 자료가 가능한 사안은 사진, 도표, 그래픽 등 시각적인 자료를 필히 첨부한다.
  8. 작성일, 작성자, 전화번호, 연락처 등을 꼭 명기한다.
  9. 소리내어 읽어봐서 어색한 곳을 찾고, 오자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교정을 부탁하고 상사에게도 사전 검토를 받는다.
  10. 지자체별 보도자료 서식으로 편집하여 시·군·구 언론담당에게 보낸다.

### 9 무연고자 사망 시 장제절차 등을 읍·면·동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연고자의 정의에서 권리·의무 순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 행려환자 또는 복지시설수급자의 사망 시 처리기관은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음
- 행려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 처리는 사망하기 전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시·군·구)에서 처리해야 하고, 연고자가 없는 시설수급자는 보호했던 시설장이 처리해야 함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하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대부분 보호했던 읍·면·동에서 하고 있으며 처리절차 등을 시·군·구 행려환자 담당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연고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장례를 치루는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장제급여 범위 안에서 매장 또는 화장 후 10년의 봉안기간을 조건으로 관내 장례식장에 의뢰하고 급여를 청구하도록 안내 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 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함에 따라 시·군·구 행려환자 담당에게 이를 요청토록 함
-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고자 권리·의무 순서로 연락을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장제급여가 지급되는 것과 유산이 있는 경우 민법상 절차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장례절차 이행을 부탁하여 연고자가 장례를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함
- 여러가지 노력에도 계속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또는 소송에 대비하여 사체를 보관중인 장례식장과 연고자가 연락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안내 함
- 재산이 있는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에 따라 처리해야 함
- 간단히 그 절차를 살펴보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 함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선임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6조에 따라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함

- 2개월 이상 공고해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1년 이상 하여야 함. 그래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함

이외에도 다른 변수가 있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고 시·군·구 행려환자담당, 읍·면·동장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

## IV. 관련용어



2014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 IV 관련용어 (가나다순)

용어	저소득층 생업자금	비고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 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 참여소득	'14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99P)
공적이전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14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08P)
국민기초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14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62P)
근로무능력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자 중에서 근로능력판정 평가를 통해 시·군·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14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89P)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은행 예금, 적금, 보험, 채권 등의 금융권 재산	'14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17P)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기본재산액 공제방식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함.	'14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45P)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14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04P)
긴급복지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이나 중한 질병과 부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의 방임, 방치 및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를 당했을 때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단전 1개월 경과, 주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 출소나 초기노숙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지원대상자에 포함 되어도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액 기준을 넘어서면 긴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며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만 가능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로 재산의 기준은 부동산 + 금융재산 - 부채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다양한 편입니다. 개별가정의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지며 위기상황이 복합이면 복합지원도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 부담이 많은 경우에 한해 예외지원이 됩니다.	'14긴급지원사업 안내(5P)

용어	저소득층 생업자금	비고
농업소득	경종업,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102P)
내일키움 통장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인데요.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월 5~10만원씩 적립하다가 3년 이내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면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5~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적립 →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시 적립금 전액 지급 → 평균 1,100만원 / 최대 1,300만원 지원 가능 (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등으로 제한	'14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안내(38P)
디딤씨앗통장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1 매칭 정부지원으로 같은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사회에 나아갈 디딤돌을 만들어주자는 의미의 아동자립을 위한 자립형성지원사업으로 사회 자립을 돕자는 취지에서 비롯하여 만18세가 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취업비용이나 학자금, 창업 지원금, 주거마련지원, 결혼자금 등에 쓸 수 있음.	'14아동복지사업 안내지침(259P)
바우처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권	'14지역자활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3P, 10P)
별도가구	가구 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실제로는 함께 사나 따로 사는 것으로 봄)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 원으로 10가지 인정 특례가 있음.(기초생활수급자 사업 참조)	'14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2P)
보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위	'14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6P)
보장기관	수급자에게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14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6P)
보장단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본단위 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기본단위	'14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6P)
복지급여	법령에 의해 소득, 재산 기준 또는 연령 등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개인 또는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보조금	'14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7P)
복지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하는 것	'14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7P)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금품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의 13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만 부과. - 부양비용: 아들과 미혼인 딸은 30%(소득, 재산적용), 출가한 딸과 사위 15%(소득적용)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 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 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108P)

용어	저소득층 생업자금	비고
부양의무자	부모나 자식을 부양해야하는 사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9P)
부채	재산 산정 시 공제해주며 금융기관 대출금(제2금융권 포함),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공제회 및 대부업체)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 2014년부터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전액 불인정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40P)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06P)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99P)
생활준비금 공제	의료비, 관혼상제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300만원을 금융재산에서 공제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31P)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도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성년후견제도 해설 (법원행정처, 3P)
소득인정액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 소득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7P)
수급권자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14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6P)
수급자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	'14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6P)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시간제 : 보육, 놀이활동, 급·간식서비스, 등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을 지원 종일제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지원	'14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17P)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차상위는 2011년 5월 시행되었으며, 최저생계비 120% 이하 대상자에게 차상위 자격확인을 통하여 복지급여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나온 정책으로 지원내용은 차상위 정부 양곡지원 사업, 노인 안 검진 및 개인 수술비지원, 보건소 방문관리사업, 푸드뱅크 연계 지원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문화바우처, 공능무료입장, 대입 기회균등 선발, 국가장학금, 난방연료긴급지원, 전기요금 긴급지원, 저소득에너지 효율개선, 저소득 연탄보조사업,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 분할 상환사업 등이 있음.	'14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지원사업안내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03P)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05P)
의료급여 1종	근로 능력 없는 수급자 가구에게 주는 의료급여로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로 병원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대상자	'14의료급여사업안내(22P)

용어	저소득층 생업자금	비고
의료급여 2종	근로능력이 있어서 보충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에 주는 의료급여로 병원 급지별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서비스 대상자	'14의료급여사업안내(23P)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05P)
일반재산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방세법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등 동산, 지방세법에 따른 임목재산, 지방세법 에따른 회원권, 소득세법에 따른 조항원 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등의 재산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16P)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99P)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04P)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03P)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사업, 취업성공패키지의 일 경험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99P)
자활사업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을 위한 목적과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14자활사업안내(3P)
장애인	신체의 불편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내부 장애를 포함하고,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포함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발급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장애인이 탑승하였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만 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게 가.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나.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다.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14장애인 활동지원사업안내(53P)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기 위한 계수	
	일반재산	4.17%/월
	금융재산	6.26%/월
승용차재산	100%/월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45P)

용어	저소득층 생업자금	비고
정보시스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업무를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 운영되는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	'14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7P)
조건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수급자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185P)
주거현물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193P)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14차상위본인 부담금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안내(3P)
추정소득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 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조건부수급자중 조건 불 이행자에게 일일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함. 전직임금을 우선적용하며, 전직임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함	'1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113P)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150% 이하)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14한부모가족지원 사업안내(36P)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 이내 탈 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예컨대 월소득이 98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26만원과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후 탈수급시 1,7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14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안내 (19P)

부 록



2014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부록1] 제출서류목록

사업명	공통서류	구비서류	비고
국민기초 차상위 본인부담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① 소득, 재산 확인서류 ② 임대차계약서(무로임대확인서) ③ 위임장 및 신분증 ④ 외국인등록 사실 확인서류 ⑤ 가족, 혼인관계 증명서 (읍·면·동 확인)	-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
차상위 (한부모, 장애, 자활, 우선돌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불필요 (우선돌봄, 자활)
기초연금		①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서 ③ 통장사본	
장애인연금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①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서 ③ 무료임대확인서 ④ 건강보험증 ⑤ 통장사본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⑦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 장애위탁심사 사전 필
장애인등록	장애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책자) 안내		- 국민연금공단 등기전송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고속도로할인 카드 발급	장애인서비스 신청서	① 자동차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고속도로할인카드발급 : 수수료(4천원)	- 표지 : 즉시 - 고속도로 : 3주가량소요
양육수당		통장사본	
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아학비(유치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신청 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신청서 ② 신분증 ③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 유아학비 (아이즐거우카드) : 농협, 부산은행 *직접신청
아동급식	급식 신청서	① 건강보험증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보호자 부재확인관련자료 (질병진단, 취업확인 등)	
청소년증 발급	발급신청서	사진1매 (*본인직접 신청)	- 재발급신청 : 전국신청가능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노인 돌봄, 발달장애 장애인활동지원, 아동능력향상서비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제공 신청서 ③ 카드발급신청서 및 개인 신용 정보동의서	① 건강보험증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④ 신분증 ⑤ 통장사본	

[부록2] 산정기준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분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비고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8인 이상 가구원 1인 증가시 301,702원
최저생계비의 20%		120,681	205,483	265,824	326,164	386,504	446,845	507,185	국민기초-부양의무가 없는 자의 <b>사적이전 소득</b> 산정범위
최저생계비 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차상위장애수당
최저생계비 130%		784,424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2,904,490	3,296,703	국민기초-부양의무 소득기준,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50%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3,803,888	<b>[이행특례]</b> , 긴급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최저생계비 170%		1,025,785	1,746,609	2,259,501	2,772,394	3,285,287	3,798,179	4,311,073	무한돌봄지원사업
기초공제재산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대도시 : 8,500만원, 중소도시 : 6,500만원, 농어촌 : 6,000만원			*공제대상부동산 (근로소득외 부동산)	
타지원액		115,340	196,391	254,060	311,731	369,402	427,071	484,742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등 타발지원액
현금급여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8인 이상 가구원 1인 증가시 244,031원 (생계+주거급여)
최저주거비 (주거급여 한도액)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2	398,158	451,923	최저생계비의 17.820%(현금급여의 22.032%)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 임차)
임차료		84,056	143,123	185,151	227,179	269,207	311,235	353,263	최저생계비의 13.930% (부양의무자 부분임차, 제3자 전체 임차)
최저주거비의 20%		21,506	36,619	47,372	58,125	68,878	79,632	90,385	제3자 제공 부분 임차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최저생계비의 130% 교육공제: 초등학생:105만원 중학생:141천원 고등학생:210만원	기초공제재산: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0만원						소득확약계종(노년, 장애인, 한부모, 최기난치성)수급(한)가+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185%	
	재산기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42%	재산특례-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 재산이 주택에 한정, 소득: 최저생계비의 50%이하							
금융재산: 2억이하-혼인한 딸(소득○금융기준○재산기준×)									
지원내역	생계급여(80.652%), 주거급여(19.348%), 의료급여,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용), 재산급여(50만원), 장애급여(75만원), (영구)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일 경우 장애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요금 할인 및 감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20만원)-시용시조례								

2. 긴급복지

구분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비고
긴급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3,803,888	최장횟수-생계:6회, 의료: 2회
긴급소득기준-생계비 (최저생계비 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긴급지원생계비		399,900	680,900	880,900	1,080,800	1,280,800	1,480,700	1,680,700	의료지원 300만원 (다른 질병으로 최대 900만원)
재산기준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금융재산은 300만원이하) 시흥:중소도시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 없음								
지원내역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교육지원,연료비(8만6천원),해산비(5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구분	가구원	-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비고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30%		-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2,904,490	3,296,703	
기초공제재산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12년이하 현물주택 자산 제외할 나머지 가구원 보호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동세대의 생계/주거 무관] 해당자의 소득재산의 소득인정액 합산 단 결혼을 한 경우 제외								
지원내역	아동양육비(만12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출생]:월 7만원)	아동양육비(초기)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연60,000원(9월 60,000원)]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연60,000원	초중고 학습자료비:월 16,000원	생필품비-가구별:월 60,000원	신입생 교육비:중학교(실-유치지급) 월-2회 하복-6월 160,000원			

